

2013년 9월 법령 적용

# 공무원 보수·여비·성과 300問 300答

2013. 9.



안전행정부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Q&A .....1

1. 초임호봉 확정 .....	16
2.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확정 .....	20
3. 호봉 재확정 .....	23
4. 승급 .....	25
5. 경력환산율표 및 상당계급 .....	28
6. 지급방법 .....	31
7. 연봉업무 .....	34

## 제2장 공무원 수당업무 Q&A .....44

1. 대우공무원수당 .....	51
2. 정근수당 .....	52
3. 가족수당 .....	55
4. 자녀학비보조수당 .....	59
5. 육아휴직수당 .....	62
6. 위협근무수당 .....	66
7. 특수업무수당 .....	68
8. 초과근무수당 .....	73
9. 실비변상 .....	81

## **제3장 공무원 예비업무 Q&A .....83**

- 1. 근무지내 국내출장 .....94
- 2. 근무지외 국내출장 .....100
- 3. 국외 출장 .....116
- 4.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124
- 5. 기타 .....133

## **제4장 공무원 성과업무 Q&A .....135**

- 1. 성과계약등 평가 .....141
- 2. 근무성적평가 .....144
- 3. 경력평정 .....154
- 4. 가점평정 .....160
-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61
- 6. 다면평가 .....163
- 7. 성과관리카드제 .....166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Q & A

## ■ 목 차 ■

I. 공무원 봉급제도 개요 .....	8
II. 공무원 봉급제도 질의응답 사례 .....	16
<b>1. 초임호봉 확정</b> .....	16
1. 초임호봉 확정시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지? .....	16
2.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	16
3. 유사경력중 시보임용전 교육훈련기간도 반드시 전력조회를 거쳐야 하는지? .....	17
4.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	17
5. 전력조회 지연 등 호봉확정 절차 지연시 초임호봉 확정은? .....	17
6. 퇴직후 30일 이내 재임용시 초임호봉 확정은? .....	17
7. '12. 1. 5 임용된 공무원이 '13. 3. 9 퇴직시 경력기간은? .....	18
8.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경력인정 방법은? .....	18
9.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 있는 공무원이 5급, 7급, 9급 공무원으로 임용시 초임호봉은? .....	18
10.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초임호봉은? .....	18
11.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초임호봉은? .....	19

- 12. 9급 3년, 8급 2년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시 초임호봉은? ..... 19
- 13.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시 초임 호봉은? ..... 19
- 14. 호봉 확정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 ... 19

**2.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확정** ..... 20

- 1. 일반직 6급 32호봉인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시 호봉은? ..... 20
- 2. 승진일 현재 승진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호봉 확정 방법은? ..... 20
- 3. '13. 7. 5 현재 일반직 6급 12호봉(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 하는 경우 호봉은? ..... 20
- 4. '13. 7. 5 현재 일반직 7급 31호봉(잔여기간 2년 5월)인 자가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호봉 및 차기 승급일은? ..... 21
- 5. 1년 6월의 9급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은? ... 21
- 6. '13. 5. 1 현재 연구사 14호봉(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호봉 및 차기 승급일은? ..... 21
- 7. '13. 8. 21 현재 지도사 14호봉(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호봉 및 차기 승급일은? ..... 22
- 8. 일반직 7급 15호봉인 공무원이 8급으로 강임시 호봉은? ..... 22
- 9. 연구관 10호봉인 공무원이 연구사로 강임시 호봉은? ..... 22
- 10. 강임일 현재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호봉확정 방법은? ..... 22

**3. 호봉 재획정** ..... 23

- 1. 초임호봉 획정과 호봉 재획정의 차이는? ..... 23
- 2. 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은 동일한 개념인지? ..... 23
- 3. 새로운 경력 합산을 신청한 경우 호봉 재획정 시기는? ..... 23
- 4.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 재획정 시기는? ..... 24
- 5. 호봉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호봉 재획정 시기는? ..... 24
- 6. '13. 7. 1 호봉 재획정시 잔여기간이 11월인 공무원의 차기 승급일은? ... 24

**4. 승급** ..... 25

- 1. '13. 7. 10 현재 잔여기간이 12개월 5일인 공무원의 승급일은? ..... 25
- 2.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일은? ..... 25
-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는? ..... 25
- 4. '13. 7. 10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급제한기간 산입시기는? ..... 26
- 5. '02. 2. 10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자가 '07. 3. 1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승급 제한기간 산입시기는? ..... 26
- 6. 직위해제자의 승급제한기간(직위해제기간) 산입시기는? ..... 26
- 7.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중 승급발령 가능 여부? ..... 26
- 8. 공무원 임용후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휴직기간이 승급기간 및 근무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26

- 9.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의 종류는? ..... 27
- 10. '10. 5. 1 9급 1호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11. 2. 1~4. 30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주당 20시간씩 근무시 차기 승급일은? ..... 27
- 11.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특별승급 시기는? ..... 27
- 12. 특별승급일이 해당 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승급 방법은? ..... 27

**5. 경력환산율표 및 상당계급 ..... 28**

- 1.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의 군 복무경력 인정 가능 여부? ..... 28
- 2. 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경력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 28
- 3. 호봉 확정시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인정 요건은? ..... 29
- 4.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없이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은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 29
- 5. 비정규직으로 민간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환산율은? ..... 29
-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은 인정되는데, 3월 미만의 경력만 여러 개인 경우는? ..... 30
- 7. 자격증·박사학위 없이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의 상당계급 적용 기준은? ... 30
- 8.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분야에서 근무 중 자격증 취득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상당계급 적용방법은? ..... 30

**6. 지급방법** ..... 31

1. 강입된 공무원의 봉급 보전시 수당도 같이 보전하는지 여부? ..... 31
2. 지방부이사관 경력자가 국가서기관으로 동일자 임·면직된 경우 강입시 등의 봉급보전 대상인지 여부? ..... 31
3.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질병휴직('12. 5. 1~'13. 4. 30)후 '13. 5. 1 복직한 뒤 '13. 5. 3 퇴직한 경우 월중 봉급 지급여부? ..... 31
4. 군입대 휴직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감봉처분인 경우 보수 감액 여부? ..... 31
5.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봉급 지급방법은? ..... 31
6. 휴직 종류별 봉급 감액 여부? ..... 32
7.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방법은? ..... 32
8.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 3. 1~'12. 12. 31 주당 30시간씩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기간의 봉급 지급방법은? ..... 32
9. '12. 1. 1일부터 1년간 시간제근무를 지정받아 주당 20시간씩 근무하던 공무원이 '12. 2. 1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경우 봉급 지급방법은? ..... 32
10. 보수의 일할계산시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1/30로 계산하는지, 해당월의 실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 33
11. 보수 지급일이 일요일인 경우 보수 지급일은? ..... 33
12. A기관에서 '12. 12. 1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3. 7. 1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임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B기관으로 복직하였을 경우, 보수 소급 지급기관은? ..... 33
13.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복무중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당연퇴직한 공무원의 보수 환수 여부? ..... 33
14. 승진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승진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승진임용에서 승진취소 전까지 지급된 보수 환수 여부? ..... 33



<b>7. 연봉업무</b> .....	34
1. 연봉상한제를 법으로 정한 사유는? .....	34
2.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이 '12년 12월말로 종료되어 신규채용 되었을 경우 '12년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을 '13년도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 ...	34
3. '13. 8. 10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연봉제 전환 시기는? ....	34
4. '13. 7. 5 4급 12호봉, 근무연수 13년, 차기승급일이 '13. 10. 1일인 4급 과장급(일반직)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5
5. '13. 5. 15 4급 4호봉, 근무연수 3년, 차기승급일이 '13. 10. 1일인 별정4급 과장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기본연봉액 및 5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5
6. 연봉제적용대상 승진자에 대한 '13년도 연봉 책정방법은? .....	36
7.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부 차관의 '13년 9월분 연봉지급액은? ....	36
8. '12. 8. 10 4·5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4급 과장급 직위로 전보된 경우 '13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	37
9. '12. 6. 20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직후 과장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13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	38
10. '13. 8. 10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3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39
11. '13. 8.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과장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9
12. '13. 4. 1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2호봉 근무연수 11년)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40

13. '13. 6. 12 안전행정부 소속공무원(3급)이 국방부 소속공무원으로 월중 전보된 경우 6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40
14. '13. 7. 10 일반직 3급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연봉지급 방법은? ..... 41
15. '13. 8. 1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를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월 연봉월액은? ..... 41
16. '13. 3. 1 별정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자를 ○○실장직위 (가등급)에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3월 연봉월액은? ..... 41
17. '13. 8. 1 계약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자를 ○○국장 직위(나등급)에 계약직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봉액은? ..... 42
18. '13. 8. 5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나등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42
19. '13. 9. 10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나등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42
20.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및 지급방법은? ..... 43

# I

## 공무원 봉급제도 개요

### 1

#### 호봉 경력 인정 제도

##### □ 제도 목적

-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보수 등 인사관리의 기초정보로 활용

##### □ 경력 인정 개요(일반직 기준)

① 공무원 경력(군경력 포함) : 10할

② 유사경력

○ 전문·특수경력

-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분야에 상근한 경력(10할 이내)
-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10할 이내)
- 공보업무 담당자가 언론기관에서 상근한 경력(10할 이내)
- 고도의 전문·특수업무 종사자로 동일업무 종사경력(10할 이내)

※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문·특수경력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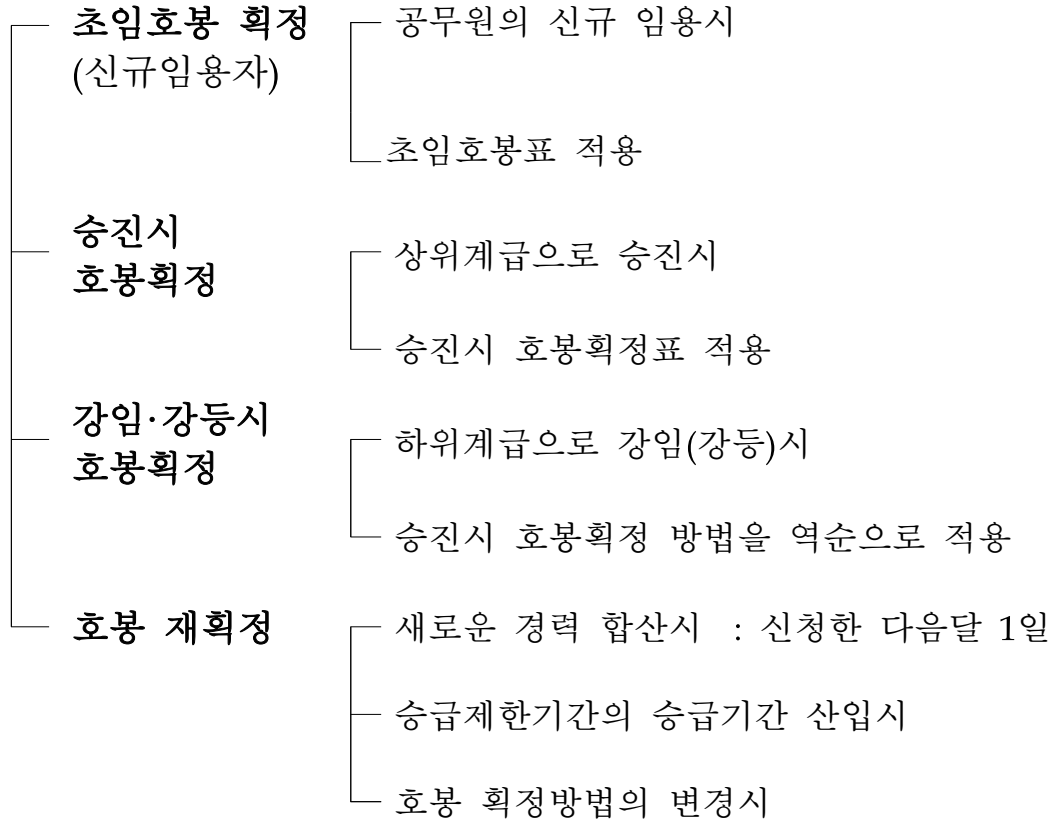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임시직, 축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5·8·10할 이내)
-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 중 안행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할)
-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8·10할 이내)
-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경력, 재외공관 근무경력(8·10할 이내)
-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8·10할 이내)

○ 기타경력

- 별정우체국·국제기구·공공기관·서울올림픽조직위 근무경력(7·10할 이내)
-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7·10할 이내)
-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7·10할 이내)
-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5·10할 이내)
- 경찰대학경력(5할)

## □ 호봉 확정방법



## 2 임용별 보수지급방법

### □ 징계 및 직위해제

구분	호봉제 (봉급)	연봉제 (연봉)	승급제한기간 (산입여부)
견책	전액	전액	6월 (3년후 산입)
감봉	1/3 감	6할 지급	12월 (5년후 산입)
정직	2/3 감	3할 지급	18월 (7년후 산입)
강등	2/3 감	3할 지급	18월 (7년후 산입)
해임·파면	전액 미지급	전액 미지급	
직위해제	8할 지급 → 5할 지급(3월후)	7할 지급 → 4할 지급(3월후)	직위해제기간 (미산입)

□ 휴직

구분		기간	호봉제 (봉급)	연봉제 (연봉)	승급기간 산입
직권 휴직	질병휴직 (결핵성)	1년 이내	7할 지급 (8할 지급)	6할 지급 (7할 지급)	미산입
	병역휴직	복무기간	미지급	미지급	산입
	행방불명	3월 이내	미지급	미지급	미산입
	법정의무수행	복무기간	미지급	미지급	산입
청원 휴직	고용휴직	채용기간	미지급	미지급	산입
	유학휴직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5할 지급 (3년 이내)	4할 지급 (3년 이내)	산입
	연수휴직	2년 이내	미지급	미지급	미산입
	육아휴직	3년 이내	미지급 *육아휴직수당 지급 (최초 1년 이내)	미지급	산입 (최초 1년 이내,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휴직기간 전 기간 산입)
	가사휴직	1년 이내	미지급	미지급	미산입
	해외동반휴직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미지급	미지급	미산입

\* 공무원 질병휴직은 승급제한이 되지 않고, 봉급도 전액 지급됨

□ 기타

구분	호봉제 (봉급)	연봉제 (연봉)	비고
결근	연가초과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2/3감	연가초과 결근일수 매1일에 대하여 4할 지급	
무급인 특별휴가 (생리휴가)	일할계산하여 감함	연봉월액의 일액감함	

### 3 공무원 연봉제도

#### □ 개 요

##### 가. 연 혁

- '99년 최초 공무원 연봉제 시행 (정무직, 1~3급 국장급 대상)
- '05년 3~4급 과장급으로 확대 시행
- '06.7.1 고위공무원단 도입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 나. 연봉제 구분 및 적용대상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 제외)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 제외)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제외)

####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가. 연봉액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 통 령	192,553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9,770
국 무 총 리	149,275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08,186
부총리 및 감사원장	112,935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06,605

※ 연봉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가. 연봉 구성

구분	내 용	
기본연봉	1차년도	봉급·정근수당(기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연액(年額)
	2차년도	전년도 연봉액 (기본연봉+성과연봉 일부)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기본급 인상액 등)
성과연봉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등급별 당해연도 지급	

※ 연봉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

나. 연봉 한계액

○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95,981	63,979
2급(상당)	88,706	59,107
3급(상당)	82,464	55,397
4급(상당)	75,439	43,846

○ 계약직공무원

-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상한액	-	-	-	75,439	66,393	58,002	48,782	41,632	34,366	29,099
하한액	71,392	64,902	59,004	50,676	37,736	29,222	23,408	19,068	-	-

- 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가	나	다	라	마
상한액	-	61,299	50,098	43,952	38,699
하한액	49,305	40,844	35,581	31,351	-

## 다. 연봉 책정

### ○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구분	내 용
일반·별정직	원칙 : 호봉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경력을 평가하여 해당 호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봉으로 전환함 특례 : 하한액 미달인 경우 하한액으로 책정가능, 우수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안행부와 협의하여 연봉 달리 책정 가능
일반계약직	원칙 : 호봉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경력을 평가하여 해당 호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봉으로 전환함(기준연봉액) - 기준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되는 경우 하한액으로 책정 가능 - 필요한 경우 기준연봉액의 <b>150%이내</b> 에서 부처에서 연봉 자율 책정 (다만, 경력직·별정직으로 퇴직한지 3월이내 일반계약직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120% 초과할 수 없음) 특례 : 1~3호 상한액 없음, 우수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안행부와 협의하여 연봉 달리 책정가능
전문계약직	원칙 :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범위(가급은 하한액의 150%범위)에서 연봉책정 특례 : 가급의 경우 우수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안행부와 협의하여 연봉 달리 책정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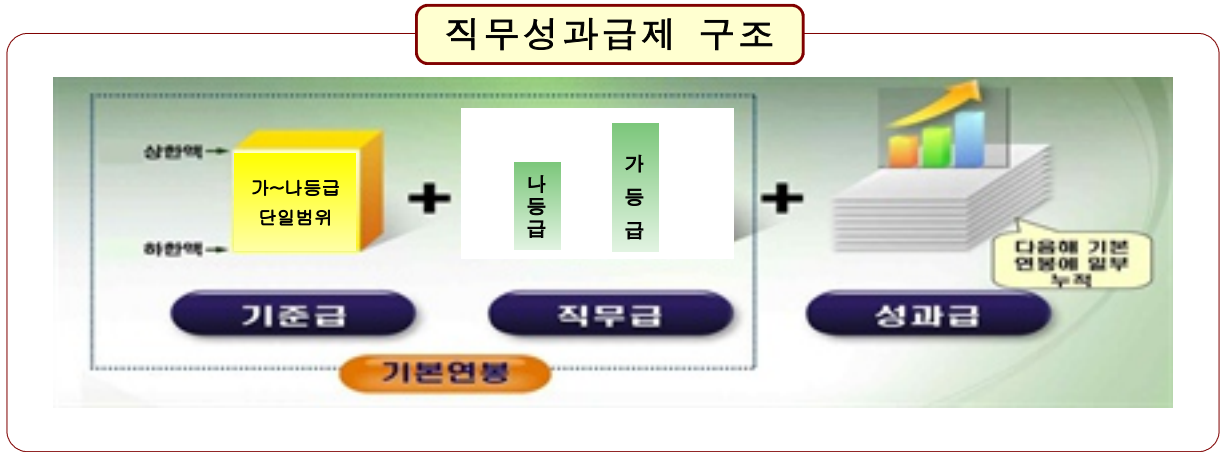
### ○ 승진·강임시 연봉지급

구 분	내 용	
승진시	호봉제 →연봉제	연도중 승진시 호봉제로 유지하다가 다음연도 1월1일 연봉제 전환 * 연봉책정방식은 신규채용시와 동일
	연봉제 →연봉제	승진전의 기본연봉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책정 *4→3급(7,025천원), 3→2급(6,242천원), 2→1급(7,275천원)
강임시	연봉제 →연봉제	강임전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되, 상한액이 연봉액 보다 적은 경우 상한액으로 적용
	연봉제 →호봉제	연봉제 적용 강임전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의 상한액 초과하지 못함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가. 연봉 구성



○ 기준급 : 개인의 경력 및 누적 성과가 반영된 숙인적 성격의 기본 급여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82,464천원	55,397천원

○ 직무급 : 직무의 곤란도 ·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

구분	가등급	나등급
연간금액	10,800 천원	4,800 천원

○ 성과급 : 전년도 업무실적을 토대로 지급, 다음해 기본연봉에 일부 누적  
(단위 : 천원)

성과계약 등 평가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및 매우미흡	지급기준액
지급률	15%	10%	6%	0%	-
가등급(실장급)	12,078천원	8,052천원	4,831천원	0	80,518천원
나등급(국장급)	10,065천원	6,710천원	4,026천원	0	67,100천원

나. 연봉책정

○ 민간인 등이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시

-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안전행정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속장관이 책정
- 우수전문인력 확보 곤란 등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
- 직무급은 임용되는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

《 신규채용자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

구 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별정직·특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
자율책정범위	77,555천원 ~ 55,397천원	94,174천원 ~ 55,39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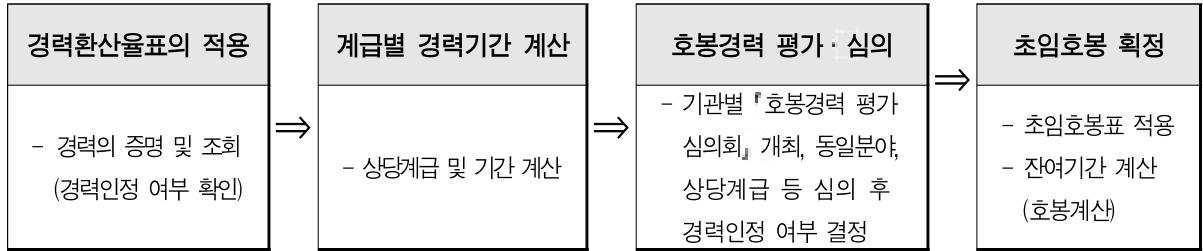
○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임용시

-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하고,
-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 전 기본연봉에 702만 5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을 책정

1. 초임호봉 확정

<< 개 요 >>

- 대상 / 시기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 / 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1 초임호봉 확정시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해야 하는지?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은 복무기간이 불명확하거나,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무관후보생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 실시함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가



2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이 최대한 상호 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 내역,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가



### 3 유사경력 중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도 반드시 전력조회를 거쳐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전 교육훈련기간은 공무원경력이 아니라 유사경력에 해당하나,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3-가



### 4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가 모두 불가능한 경우에는?

- 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전력조회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인정요건(동일분야 여부, 유급·상근 여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당사자인 개인이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유사경력을 인정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등을 통해 정하여야 함
- 이 때 재직사실 및 재직기간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의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이 있으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와 관련한 자료는 공무원 개인이 최대한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3-가



### 5 전력조회 지연 등 호봉획정 절차 지연시 초임호봉 획정은?

-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유사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실시 등으로 호봉 절차가 지연되어 호봉인정 여부가 추후에 확정된 경우 신규채용일자 기준으로 초임호봉 획정(정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3-가



### 6 퇴직후 30일 이내 재임용시 초임호봉 획정은?

- 재임용 당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퇴직 당시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퇴직 당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 획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1-3-가

**Q A 7** '12. 1. 5 임용된 공무원이 '13. 3. 9 퇴직시 경력기간은?

- 1년 2개월 4일
  - '12. 1. 5~13. 1. 4 : 1년
  - '13. 1. 5~13. 3. 4 : 2개월
  - '13. 3. 5~13. 3. 9 : 4일(3. 9 퇴직일은 제외)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나

**Q A 8**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경력인정 방법은?

-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경력 인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나

**Q A 9**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 있는 공무원이 5급, 7급, 9급 공무원으로 임용시 초임호봉은?

-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확정
  -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 4호봉
  -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7급 4호봉
  -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4호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나

**Q A 10**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초임호봉은?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①)'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②)'의 호봉확정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 확정하므로 5급 4호봉으로 확정
  - ① 9급 6호봉(공무원 2년+군 3년)→8급5호봉→7급4호봉→6급3호봉→5급 2호봉
  - ② 5급 4호봉(군 3년)
  - ①의 5급 2호봉보다 ②의 5급 4호봉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 4호봉으로 확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나

**Q A 11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초임호봉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 확정하므로 9급 4호봉으로 확정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초임호봉 확정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나**

**Q A 12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초임호봉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 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확정하므로 7급 4호봉으로 확정
    - 9급 4호봉(9급 3년) → (승진) → 8급 3호봉 → 8급 5호봉(8급 2년) → (승진) → 7급 4호봉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나**

**Q A 13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초임호봉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확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므로 8급 8호봉으로 확정
    - 9급 4호봉(9급 3년) → (승진) → 8급 3호봉 → 8급 8호봉(8급 2년+7급 3년)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나**

**Q A 14 호봉 확정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지?**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확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이 원칙
  -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가능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3-나**

## 2.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확정

### « 개 요 »

- 대상 / 시기 : 승진·강임·강등하는 공무원 / 승진·강임·강등일
- 절차 및 방법
  - ① 승진·강임·강등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② 승진시 호봉확정표 적용(단, 강임·강등은 승진시 호봉 확정방법 역적용)

#### Q A 1 일반직 6급 32호봉인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시 호봉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8에 따라, 32호봉에서 승진시 31호봉으로 호봉이 확정되어야 하나, 5급은 31호봉이 없고 30호봉이 최고호봉이므로 30호봉으로 호봉 확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1-다

#### Q A 2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호봉 확정 방법은?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 후 승진시 호봉확정 방법에 의해 호봉 확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1-다

#### Q A 3 '13. 7. 5 현재 일반직 6급 12호봉(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호봉은?

- 승진일 현재 6급에서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6급 13호봉으로 호봉 승급시킨 후 승진시 호봉확정표에 의거 5급 12호봉(잔여기간 3일)으로 호봉 확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1-다



4

‘13. 7. 5 현재 일반직 7급 31호봉(잔여기간 2년 5월)인 자가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호봉 및 차기 승급일은?

-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최고호봉에서 승진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므로 6급 30호봉(잔여기간 11월 29일)이며, 차기 승급일은 '13.8.1일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1-다



5

1년 6월의 9급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 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확정
-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므로 승진되는 계급에서는 잔여기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7급 1호봉으로 호봉 확정

- 9급 2호봉(잔여기간 6월) → (승진) → 8급 1호봉(잔여기간 6월) → 7급 1호봉(잔여기간 0월)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1-다



6

‘13. 5. 1 현재 연구사 14호봉(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호봉 및 차기 승급일은?

-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하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8 비고 3의 가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6월 가산하여야 함
- 이 경우 연구사에서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 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하므로,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6개월)이고, 차기 승급일은 '13.6.1일임

- 연구사 14호봉(잔여기간 10월) → (승진)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0월+6월)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1-다



Q A 7

‘13. 8. 21 현재 지도사 14호봉(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호봉 및 차기 승급일은?

-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하나,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8 비고 3의 나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는 잔여기간에 6월 가산하여야 함
- 승진시 호봉확정표에 따라 지도사 14호봉에서 승진시 지도관 8호봉이며,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는 호봉대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잔여기간 가산 불필요하며, 차기 승급일은 '14. 1. 1일임
  - 지도사 14호봉(잔여기간 8월) → (승진) 지도관 8호봉(잔여기간 8월)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1-다

Q A 8

일반직 7급 15호봉인 공무원이 8급으로 강임시 호봉은?

- 강임시 호봉확정은 승진시 호봉확정 방법을 역으로 적용하므로 8급 16호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2-다

Q A 9

연구관 10호봉인 공무원이 연구사로 강임시 호봉은?

- 강임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확정하므로 연구사 16호봉으로 확정
  - 연구관 10호봉 → (승진시 방법 逆 적용) → 연구사 15호봉, 16호봉 → 연구사 16호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2-다

Q A 10

강임일 현재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호봉확정 방법은?

- 강임일 현재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 후, 승진시 호봉확정 방법을 역으로 적용하여 호봉 확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II-2-다

### 3. 호봉 재획정

#### << 개 요 >>

- 대상 : 재직중인 공무원
- 호봉 재획정 요건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Q A 1 초임호봉 획정과 호봉 재획정의 차이는?

- 초임호봉 획정은 신규채용되는 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호봉을 부여하는 것이며, 호봉 재획정은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봉을 다시 부여하는 것임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V-1

#### Q A 2 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은 동일한 개념인지?

- 호봉 재획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는 호봉 정정과는 별개의 개념임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V-2

#### Q A 3 새로운 경력 합산을 신청한 경우 호봉 재획정 시기는?

-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호봉 재획정
- 전력조회 등 호봉합산절차가 수개월 지연된 경우,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소급하여 호봉 재획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V-3

**Q A 4**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 재획정 시기는?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V-3

**Q A 5** 호봉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호봉 재획정 시기는?

- 복직일에 재획정
- 단,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 직위해제 중 새로운 경력 합산 등 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시 별도로 재획정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V-3

**Q A 6** '13. 7. 1 호봉 재획정시 잔여기간이 11월인 공무원의 차기 승급일은?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므로, 차기 승급일은 '13. 8. 1일임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IV-2

## 4. 승급

### << 개 요 >>

- 정기승급 요건
  - 정기승급일(매월 1일) 현재 승급 제한 사유가 없고,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절차 및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 잔여승급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
- 승급 제한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사람(단, 공무상질병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Q A 1** '13. 7. 10 현재 잔여기간이 12개월 5일인 공무원의 승급일은?

- 정기 승급일은 매월 1일이므로 '13년 8월 1일이 차기 승급일임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가

**Q A 2**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일은?

- 통상의 정기승급일이 아니라,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나

**Q A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는?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영창·근신·견책(3년)
  -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근신·견책(6월)
  -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 가산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다



4

**‘13. 7. 10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승급제한기간 산입 시기는?**

-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19월임
- 정직처분이 종료된 '13. 8. 10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 8.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 9.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18월을 합산하여 호봉 재확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다



5

**‘02. 2. 10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자가 '07. 3. 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승급제한기간 산입시기는?**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12월+ 견책 6월) 산입시기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02. 5. 10)로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인 8년(감봉 말소기간 5년+견책 말소기간 3년)이 경과한 날('10. 5. 10)의 다음달 1일인 '10. 6. 1일임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다



6

**직위해제자의 승급제한기간(직위해제기간) 산입시기는?**

- 정기승급일 현재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은 승급이 제한되며, 직위해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 직위해제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 불가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다



7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중 승급발령 가능 여부?**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으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다



8

**공무원 임용후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고 군복무를 한 경우 휴직기간이 승급기간 및 근무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므로 병역휴직 기간은 승급기간 및 근무연수에 포함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라

**Q A 9**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의 종류는?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 1호에 해당하는 휴직
    - \* 병역휴직, 법정업무수행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최초 1년 이내에 한해 산입하되, 셋째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3년까지 산입), 노조전임휴직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라

**Q A 10** '10. 5. 1. 9급 1호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이 '11. 2. 1~4. 30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주당 20시간씩 근무시 차기 승급일은?

-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급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함
  -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정상근무기간 9개월('10. 5. 1~11. 1. 31)과 시간제근무기간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인 3개월('11.2.1.~4.30.)이 모두 승급기간에 반영되므로 차기 승급일은 '11. 5. 1일임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1-라

**Q A 11**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되는 공무원의 특별승급 시기는?

-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 승급이 원칙이나,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의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2-(1)-나

**Q A 12** 특별승급일이 해당 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승급 방법은?

- 2호봉 승급(특별승급 1호봉+정기승급 1호봉)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2-(1)-다

## 5. 경력환산율표 및 상당계급

### << 개 요 >>

#### ○ 경력환산율표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일반직공무원, 공인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능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교육공무원 등 (영 별표 11·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22

○ 상당계급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별표 2부터 4까지 참조



1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의 군 복무경력 인정 가능 여부?**

- 군 복무경력은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불가
    - \*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불가하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



2

**무관후보생 기간을 군 복무경력 계산시 포함하는지 여부?**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음
    - \* 무관후보생기간은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확인 가능
-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

**Q A 3 호봉 확정시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인정 요건은?**

-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인 경우 인정
-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

**Q A 4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이나 박사학위 없이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은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이라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

**Q A 5 비정규직으로 민간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환산율은?**

-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인 경우 인정
- 경력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



Q A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은 인정되는데, 3월 미만의 경력만 여러 개인 경우는?

- “3개월 이상 상근”의 의미는 단일고용계약 단위가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3개월 미만의 단절된 경력이 여러 개일지라도 이를 묶어서 3개월 이상으로 계산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

Q A 7

자격증·박사학위 없이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의 상당계급 적용 기준은?

-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상당계급 적용

일반직등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기능직공무원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경찰·소방공무원	경정/소방령	경감/소방령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8년이상	8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3

Q A 8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분야에서 근무 중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상당계급 적용방법은?

-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근무연수 기준 상당계급을,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은 자격증 상당계급을 적용하여 호봉 확정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4

## 6. 지급방법

### Q A 1 강임된 공무원의 봉급 보전시 수당도 같이 보전하는지 여부?

- 강임시 봉급은 보전대상이나, 수당은 보전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1

### Q A 2 지방부이사관 경력자가 국가서기관으로 동일자 임·면직된 경우 강임시 등의 봉급보전 대상인지 여부?

- 강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5조에 의하여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그 직렬에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방 부이사관에서 국가서기관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봉급보전 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1

### Q A 3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질병휴직('12. 5. 1~'13. 4. 30) 후 '13. 5. 1 복직한 뒤 '13. 5. 3 퇴직한 경우 월중 봉급 지급여부?

-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5월중 봉급 전액 지급
  - \* 위 대상자가 복직과 동시에 5.1일자로 퇴직한 경우에는 봉급 미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3

### Q A 4 군입대 휴직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감봉처분인 경우 보수 감액 여부?

- 군입대 휴직자는 휴직기간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수 감액은 복직 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감액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4-가

### Q A 5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봉급 지급방법은?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매 1일에 대해 봉급일액의 2/3을 감하고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4-나

**Q A 6 휴직 종류별 봉급 감액 여부?**

- 봉급이 전액지급되는 휴직 : 공무상 질병휴직
-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휴직 : 질병휴직(단, 결핵질환 휴직은 8할)
-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휴직 : 유학휴직
-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육아휴직(육아휴직수당 지급), 행방불명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4-라

**Q A 7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방법은?**

-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5

**Q A 8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 3. 1~'12. 12. 31 주당 30시간씩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기간의 봉급 지급방법은?**

-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6-가

**Q A 9 '12. 1. 1일부터 1년간 시간제근무를 지정받아 주당 20시간씩 근무 하던 공무원이 '12. 2. 1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경우 봉급 지급 방법은?**

- 정직 3월 처분기간중에는 해당 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하는 동안 지급받게 될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2/3 감액된 봉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VI-6-나

Q A 10

보수의 일할계산시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1/30로 계산하는지, 해당월의 실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월의 실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

\* (예시) 1월 : 1/31, 2월 : 1/28(29), 3월 : 1/31, 4월 : 1/30, 5월 : 1/31, 6월 : 1/30

【관련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정의)

Q A 11

보수 지급일이 일요일인 경우 보수 지급일은?

-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는 바, 보수 지급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요일이 공휴일 이거나 그 공휴일을 포함한 수일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해 공휴일의 전일에 지급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보수 지급일)

Q A 12

A기관에서 '12. 12. 1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13. 7. 1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임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B기관으로 복직하였을 경우, 보수소급 지급기관은?

- 현재 소속기관인 B기관에서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 지급 기관)

Q A 13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복무중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당연 퇴직한 공무원의 보수 환수 여부?

- 법령에 따라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보수를 지급하므로 환수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Q A 14

승진배수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승진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승진임용에서 승진취소 전까지 지급된 보수 환수 여부?

- 승진임용이 취소된 경우 승진임용시점부터 취소되기 전까지 기지급된 보수는 승진임용에 있어 사실상 승진된 계급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환수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제25조(퇴직 후의 실제 근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 7. 연봉업무

### Q A 1 연봉상한제를 법으로 정한 사유는?

- 연봉제는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제와는 달리 공직사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며 그 운영에 있어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즉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
- 이러한 연봉한계액을 두는 것은 해당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보수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 일부 계약직공무원(일반계약직 1~3호, 전문계약직 가급)의 경우 연봉상한액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직종 특성상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우수 전문인력 확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I-2-다

### Q A 2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이 '12년 12월말로 종료되어 신규채용 되었을 경우 '12년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을 '13년도에 지급받을 수 있는지?

- '12년말까지 채용계약된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2. 12. 31일까지 근무하도록 계약한 것이므로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
- 다만, 다음연도 1. 1일부로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봉월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연도중 퇴직한 것으로 보아 '12. 12. 31일 기준 성과연봉 평가등급에 따라 책정된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V-5-다

### Q A 3 '13.8.10.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급으로 승진한 경우 연봉제 전환 시기는?

- 연도중 승진자이므로 '13년 말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14. 1. 1 연봉제로 전환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1-나

**Q 4** '13.7.5. 4급 12호봉, 근무연수 13년, 차기승급일이 '13. 10. 1일인 4급 과장급(일반직)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 지급 방법은?

- 4급공무원 연봉하한액 : 43,846천원(영 별표 33)
  - 연봉액 : 53,672천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3,449,700원(4급 12호봉 봉급액 3,382,1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9/12인 67,57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15년(1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53,672,000원(53,671,416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연액 : 41,396,400원(3,449,700원 × 12월)
      - 정근수당 : 3,449,700원(3,449,700원 × 100%)
      - 정근수당 가산금 : 960,000원(80,000원 × 12월)
      - 관리업무수당 : 3,725,670원(3,449,700원 × 108%)
      - 명절휴가비 : 4,139,640원(3,449,700원 × 120%)
  - 연봉월액 : 4,472,660원 (연봉액 53,672천원 ÷ 12월)
  - '13년 7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3,895,540원[연봉월액 4,472,660원/31일×27일(7.5~7.31)]
-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1-가

**Q 5** '13. 5. 15 4급 4호봉, 근무연수 3년, 차기승급일이 '13. 10. 1일인 별정4급 과장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기본연봉액 및 5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 : 40,912천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2,638,200원 (4급 4호봉 봉급액 2,580,6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7/12인 57,575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5년(3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39,593,000원(39,592,590원을 최종 백원단위 절상)
      - 봉급연액 : 31,658,400원(2,638,200원×12월)
      - 정근수당 : 1,319,100(2,638,200원×50%)
      -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12월)
      - 관리업무수당 : 2,849,250원(2,554,200원×108%)
      - 명절휴가비 : 3,165,840원(2,638,200원×120%)
  -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연봉하한액(43,846천원)으로 책정함
  - '13년도 기본연봉액(최종) : 43,846천원
    - 연봉월액 : 3,653,830원(기본연봉액 43,846천원 ÷ 12월)
    - '13년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2,003,710원[연봉월액 3,653,830원/31일×17일(5.15~5.31)]
-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1-가



## 6 연봉제적용대상 승진자에 대한 '13년도 연봉 책정방법은?

- '13년도 연봉
  - 2012년도 중 승진자의 연봉 = '13년도 기본연봉 + '13년도 성과연봉
  - 2013년 1월 1일 승진자의 연봉 = 2013년도 기본연봉
- '13년도 기본연봉 = ①'12년도 급여연액 + ②'13년도 처우개선분
  - ① '12년도 급여연액(영 별표 28에 따라 확정된 승진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봉급·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안행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합산)
  - ② '13년도 처우개선분(기본급 인상분 3.29% 적용)
    - = ① × 3.29% \* 근무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 \* 개인별 근무연수(경력직의 경우에는 2012.12.31.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차등적용)
      - 10년 미만자 3.27%, 9년 미만자 3.25%, 8년 미만자 3.23%, 7년 미만자 3.2%, 6년 미만자 3.18%, 5년 미만자 3.16%, 4년 미만자 3.14%, 3년 미만자 3.12%, 2년 미만자 3.1%, 1년 미만자 3.07%
- '13년도 성과연봉은 '12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1-나



## 7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부 차관의 '13년 9월분 연봉 지급액은?

- 차관 연봉액은 106,605천원, 연봉월액은 8,800,410원(연봉액 106,605천원÷12월)임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VI-1



8

‘12.8.10. 4·5급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16호봉, 근무연수 17년, 차기승급예정일 ‘13.4.1)이 4급 과장급 직위로 전보된 경우 ‘13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

- 연도중 전보자이므로 ‘12년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호봉제를 적용하며 연봉제 전환 일시는 ‘13. 1. 1일임
- ‘13년도 연봉액은 ‘13년도 기본연봉 + ‘13년도 성과연봉
  - ‘13년도 기본연봉은 ① ‘12년도 급여연액 + ② ‘13년도 처우개선분임
- ‘13년도 기본연봉액 : 58,469,000원
  - ① ‘12년도 급여연액 : 56,606,70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 급 액 : 3,641,800원(‘12년도 4급 16호봉 봉급액 3,591,5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9/12인 50,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19년(17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56,606,700원
      - 봉급연액 : 43,701,600원(3,641,800원×12월)
      - 정근수당 : 3,641,800원(3,641,800원×100%)
      - 정근수당 가산금 : 960,000원(80,000원×12월)
      - 관리업무수당 : 3,933,140원(3,641,800원×108%)
      - 명절휴가비 : 4,370,160원(3,641,800원×120%)
  - ② ‘13년도 처우개선분 : 1,862,360원
    - ‘13년도 처우개선분 : 1,862,360원(56,606,700원×3.29%)
- ‘13년도 성과연봉액 : 1,857,000원[61,895,000원(4급 성과연봉 기준액)×3%(B등급 지급률)]
- ‘13년도 연봉액 : 60,326,000원(기본연봉액 58,469,000원+성과연봉액 1,857,000원)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1-나



Q A 9

‘12.6.20. 5급에서 4급으로 승진 직후 과장급으로 임용된 공무원 (‘12.12.31 현재 23호봉, 근무연수 24년, 차기승급예정일 ‘13.5.1)을 ‘13년도에 연봉제로 전환하는 방법은(‘12년도 업무성과에 따른 ‘13년도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A등급이라 가정)?

- 승진한 해당 연도 말까지의 보수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연봉제 전환일시는 ‘13.1.1임
- ‘13년도 연봉액은 ‘13년도 기본연봉 + ‘13년도 성과연봉
- ‘13년도 기본연봉은 ① ‘12년도 급여연액 + ② ‘13년도 처우개선분
- ‘13년도 기본연봉액은 64,847,000원
  - ① ‘12년도 급여연액 : 62,780,840원
    - 연봉 산정기준
      - 봉급액 : 4,006,600원(23호봉 봉급액 3,978,500원에, 1호봉 승급액의 8/12인 28,133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근무연수 : 26년(24년 + 2년)
    - 연봉 산정내역 : 62,780,840원
      - 봉급연액 : 48,079,200원(4,006,600원×12월)
      - 정근수당 : 4,006,600원(4,006,600원×100%)
      - 정근수당 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12월)
      - 관리업무수당 : 4,327,120원(4,006,600원×108%)
      - 명절휴가비 : 4,807,920원(4,006,600원×120%)
  - ② ‘13년도 처우개선분 : 2,065,480원(62,780,840원×3.29%)
- ‘13년도 성과연봉액은 3,095,000원(3,094,750원을 백원단위에서 절상)
  - 3,094,750원 = 61,895,000원(4급 성과연봉 기준액)×5%(A등급 지급률)
- ‘13년도 연봉액은 67,942,000원(기본연봉액 64,847,000원+성과연봉액 3,095,000원)
- 연봉월액은 5,661,830원(연봉액 65,940천원 ÷ 12월)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1-나

Q A 10

‘13.8.10.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3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4급 연봉액 : 65,095천원(가정)
    - 기본연봉액 : 62,000천원, 성과연봉액 : 3,095천원
  - 3급 연봉 상한액은 82,464천원, 3급 승진시 승진가급은 7,025천원
  - 승진된 3급에서의 연봉액 : 72,120천원(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
    - 기본연봉액은 69,025천원(승진전 4급에서의 기본연봉액 62,000천원과 승진가급 7,025천원 합산), 성과연봉액은 3,095천원
  - 승진된 3급 연봉월액은 6,010,000원[72,120천원(3급 연봉액) ÷ 12월]
  - 8월분 연봉월액은 5,840,03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1,574,870원 = 5,424,580원(4급 연봉월액)/31일×9일(8.1~8.9)
    - 4,265,160원 = 6,010,000원(3급 연봉월액)/31일×22일(8.10~8.31)
  - 9월이후 연봉월액 : 6,010,000원(3급 연봉월액)
-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1-나

Q A 11

‘13.8.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과장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 4급 연봉액은 62,000천원(가정)
  - 5급 연봉 상한액은 61,239천원
  - 강임후(5급) 연봉액은 61,239천원(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1-나

Q 12

‘13.4.1.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2호봉 근무연수 11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4호 연봉 한계액(상한액 : 75,439천원, 하한액 : 50,676천원)
  - 기준연봉액 : 62,802천원(62,801,11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연액 : 48,754,800원[4,062,900원(4급22호봉) × 12월]
    - 정근수당 : 4,062,900원(4,062,9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60,000원 × 12월)
    - 관리업무수당 : 4,387,930원(4,062,900원 × 108%)
    - 명절휴가비 : 4,875,480원(4,062,900원 × 120%)
  - 연봉 책정(안)
    - 기준연봉액의 130% 조정시 연봉액 : 81,643천원
    - 기관 자율책정시 연봉액 : 75,439천원(연봉등급 4호의 연봉상한액)
      - \* 130% 조정에 의한 연봉액(81,643천원)이 연봉 상한액(75,439천원)을 초과하므로 연봉 상한액으로 책정
    - 연봉상한액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근상위등급 상한액 범위(88,706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안행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책정 가능
  - 연봉월액은 6,286,580원(75,439천원÷12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V-3-라

Q 13

‘13.6.12. 안전행정부 소속공무원(3급)이 국방부 소속공무원(3급)으로 월중 전보된 경우 6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국방부 보수지급일은 매월 10일, 안전행정부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임
  - 국방부의 보수지급일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전보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6월분 연봉월액을 별도 지급함
  - 반대로 국방부 소속공무원이 안행부로 전보된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이 빠른 국방부에서 이미 6월분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한 상태이므로 안행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II-2-다

Q A 14

‘13.7.10. 일반직 3급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연봉지급 방법은?

- 휴직전 연봉액은 62,800천원으로 가정하면 지급률은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급
- 7월분 연봉월액은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하여 3,747,730원임
  - 휴직전 연봉월액 :  $5,233,330\text{원}/31\text{일} \times 9\text{일}(7.1\sim 7.9) = 1,519,350\text{원}$
  - 휴직후 연봉월액 :  $(5,233,330\text{원} \times 60\text{퍼센트})/31\text{일} \times 22\text{일}(7.10\sim 7.31) = 2,228,380\text{원}$
- 8월 이후 연봉월액은 3,140,000원임(연봉액 62,800,000원  $\div$  12월  $\times$  60%)

【관련 규정】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III-2-다

Q A 15

‘13.8.1. 개방형직위(직무등급 : ‘가’등급)에 민간전문가를 계약직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8월 연봉월액은?

- 연봉산정 방법에 있어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으로 자율채정범위 내에서 기준급을 책정(기준급 하한액인 55,397천원으로 책정하였다고 가정), 직무급은 ‘가등급’이므로 10,800천원임
- 연봉액은 66,197천원(기준급+직무급)이며, 8월 연봉월액은 5,516,410원임( $66,197\text{천원} \div 12\text{월}$ )

【관련 규정】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III-2-다

Q A 16

‘13.3.1. 별정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자(퇴직당시 기준급 : 79,000천원, 직무급 : 4,800천원, 성과연봉 : 4,026천원, ‘13. 2. 15 퇴직)를 ○○실장직위 (직무등급 : 가등급)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3월 연봉월액은?

- 연봉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음
  - 기준급은 퇴직당시 기준급 금액이 자율채정범위의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79,000천원으로 책정 가능, 직무급은 10,800천원이며 따라서 기본연봉은 89,800천원임
  - 성과연봉은 퇴직 후 30일 이내 채용된 경우에는 종전 성과연봉 4,026천원을 지급
- 따라서 연봉액은 93,826천원임
- 3월 연봉월액은 7,818,830원임( $93,826\text{천원} \div 12\text{월} = 7,818,830\text{원}$ )

【관련 규정】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III-2-라



17

‘13.8.1. 계약직 고위공무원이었던 자(퇴직당시 기준급 : 95,000천원, 성과연봉 : 8,052천원, ‘13.7.5 퇴직)를 ○○국장 직위(직무등급 : ‘나’등급)에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봉액은?

- 기준급은 퇴직당시 기준급 금액이 자율채정범위의 상한액보다 많더라도 95,000천원으로 책정 가능, 직무급은 4,800천원, 성과연봉은 8,052천원, 따라서 연봉액은 107,852천원임

【관련 규정】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III-2-라



18

‘13.8.5. 3급 공무원(기본연봉 : 62,000천원, 성과연봉 : 4,857천원)이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는 승진전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하므로 62,000천원, 직무급 4,800천원, 성과연봉 4,857천원, 따라서 연봉액은 71,657천원임
- 승진 전 보수(‘13.8.1~8.4)는 연봉월액 5,571,410원(66,857천원÷12월)이며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하면 718,890원임(5,571,410원÷31일×4일)
- 승진 후 보수(‘13.8.5~8.31)는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하면 5,520,900원임(5,971,410원÷31일×27일)
- 따라서 ‘13년 8월분 지급액은 5,919,790원임(718,890원+5,520,900원)

【관련 규정】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III-3-다



19

‘13.9.10. 4급 공무원(기본연봉 55,000천원, 성과연봉 4,333천원)이 고위공무원(직무등급 : ‘나’등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연봉은?

- 기준급은 승진전 기본연봉 55,000천원에다 승진가급 7,025천원을 더한 62,025천원, 직무급 4,800천원, 성과연봉 4,333천원으로 연봉액은 71,158천원임
- 연봉월액은 5,929,830원임(71,158천원÷12월)
- 승진 전 보수(‘13.9.1~9.9)는 1,483,320원
  - 연봉월액 4,944,410원(59,333천원÷12월)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하면 1,483,320원(4,944,410원÷30일×9일)
- 승진 후 보수(‘13.9.10~9.30)는 4,150,880원
  - 임용일 기준 일할계산하면 4,150,880원(5,929,830원÷30일×21일)
- 따라서 ‘13년 9월분 지급액은 5,634,200원임(1,483,320원+4,150,880원)

【관련 규정】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III-3-다



## 20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및 지급방법은?

- 3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 승진 전의 기본연봉을 기준급으로 책정 하되, 승진전 기본연봉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함
- 4급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시 승진 전의 기본연봉에 7,025천원을 가산 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하되, 그 금액이 기준급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급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함
- 승진 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 전 연봉월액과 승진 후 연봉월액을 각각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함
  - 승진 전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후 연봉(기준급+직무급+성과 연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관련 규정】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III-3-나

# 제2장 공무원 수당업무 Q & A

## 목 차

I. 질의응답 사례 .....	51
1. 대우공무원수당 .....	51
1.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받는 근속승진자가 강임후 원직급 승진하였을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은? .....	51
2. 정근수당 .....	52
1.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	52
2. 질병휴직중인 자(2013.5월~11.31일까지)가 2013.7월, 2014.1월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	53
3.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총2년/ 2011.6.1~2013.5.31)한 공무원이 2013.6.1자로 복직시, 2013.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	53
4.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총 2년/ 2011.6.1~2013년.5.31)한 공무원이 2013.6.1자로 복직시, 2013.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	53
5.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3.6.15일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2013.7월 정근수당 지급은? .....	54
6.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 육아휴직 복직을 12.3일에 한 경우 다음해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54

**3. 가족수당** ..... 55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 여부? ..... 56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의 필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 56
3.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56
4. 공무원이 이혼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으나,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57
5.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셋째 자녀가산금 지급여부는? ..... 57
6.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에는 '동거인' 으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57
7. 공무원이 4명의(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57
8. 공무원이 4명의(배우자, 부, 모, 자녀1)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55세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58
9. 부부가 부부공무원일 경우 본인은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을 각각 지급가능 여부는? ..... 58
10.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 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8
11.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59



**4. 자녀학비보조수당** ..... 59

1.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 60
2.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는? ..... 60
3.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13.3.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61
4. 영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국외파견된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 ..... 61
5. 공무원의 자녀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공납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방법은? ..... 61
6. 공무원의 자녀가 2년 과정으로 졸업을 하는 학교에 진학한 경우로 2년간 총 학비가 3년 과정으로 졸업하는 학교의 총 학비와 비슷한 경우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62

**5. 육아휴직수당** ..... 62

1.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63
2.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 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 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63
3.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 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63

4. 6개월간('13.1.1~'13.6.30)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능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계산방법은? (수당 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사례) ..... 64
5. 1년간('13.1.1~'13.12.31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5급 10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수당 총지급액이 100만원 이상 사례) ..... 64
6. 1년간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한 공무원이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후 다시 둘째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15%에 대한 일시금 지급방법은? ..... 64
7. 첫째자녀 출산후 복직하여 5개월 근무 후 둘째출산을 위해 출산휴가를 3개월간 사용한 경우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 15%에 대한 일시금을 출산휴가중에 받을 수있는지? ..... 65
8. 육아휴직을 사용한 A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복직후 3개월간 근무후, B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지급 기관은? ..... 65
9. 육아휴직 중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을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은? 65

**6. 위험근무수당** ..... 66

1. 보일러 비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66
2.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에 행정직공무원이 종사할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67
3.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에 해당 업무 자격증 미소지자가 종사할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67
4.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방사선을 취급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67

**7. 특수업무수당** ..... 68

1. 전산직 공무원으로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1)~11)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수당지급 방법은 ? ..... 68
2. 해당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일반직 기술직군 4급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 지급여부는? ..... 69
3. 시설직 공무원이 직렬과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을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1)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 69
4. 일반 행정직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70
5. 공업직 공무원으로 소방관련법에 의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70
6. 공업직 공무원이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자로 자격증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71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받던 공무원이 기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였을 경우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방법은? ..... 71
8. 기술정보수당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고 있는 운전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가산금 병급 지급이 가능한지? ..... 72
9. 국가직 기능직(사무직군,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전산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전산업무수당 지급받고 있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72

10.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는 4급상당(부서장)이고 호봉  
 확정시 적용되는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연구관으로 5급상당이 적용될  
 경우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 방법은? ..... 73

**8. 초과근무수당** ..... 73

1.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시 초과근무 실적시간 인정여부는? ..... 74
2.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일이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  
 되는지? ..... 75
3. 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근무 인정  
 여부는? ..... 75
4. 현업대상자가 근무중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외출한 경우에 초과근무  
 70시간 계산방법은? ..... 76
5. 휴직 등의 사유로 현업공무원의 업무를 일반대상자가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은? ..... 76
6. 일반대상자인 공무원이 휴일에 나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77
7. 현업공무원이 휴일에 시간외근무를 5시간 하였을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77
8. 휴일에 소속과장과 기관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을 다녀 올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인정 할 수 있는지? ..... 77
9.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인정 할 수  
 있는지? ..... 78

- 10. 근무지의 출장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인정 할 수 있는지? ..... 78
- 11. 당직근무 익일에 오전 근무후 오후에 휴무를 실시할 경우 오전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79
- 12. 월중 승진자의(일반대상자)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 79
- 13. 초과근무 시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고, 보조수단으로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e-사람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였으나 지문을 미입력한 사례, 지문은 입력하였으나 e-사람을 미입력한 사례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인정방법은? ..... 80
- 14. 교육파견 기간 중 교육이 없는 주말에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는지? 80

**9. 실비변상** ..... 81

- 1. 기능직공무원이 3.31에 퇴직하고 4.1일자로 일반직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은? ..... 81
- 2.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의 연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은? ..... 82

## 1. 대우공무원수당

## 《 개 요 》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 □ 지급대상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구 분	대상계급	근 무 기 간	비 고
일반직	4급~5급	해당계급 7년 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6급~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연구사.지도사	해당계급 10년 이상	
기능직	기능2급~10급	해당계급 5년 이상	

## □ 지급액

- 해당 공무원 월봉금액(기본급)의 4.1%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월액 × 78% × 4.1%



1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받는 근속승진자가 강임후 원직급 승진하였을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은?

-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임.
-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임용 일자에 상실되므로 대우공무원이었던 공무원이 강임하여 원직급으로 승진한 경우 대우공무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우공무원으로 다시 선발되어야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1 대우공무원수당

## 2. 정근수당

### 《 개 요 》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별표 2

#### □ 지급일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 지급요건

-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받은 공무원도 포함되나, 봉급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음 (예 : 육아휴직수당)

####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근무 연수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지급률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정근수당 대상인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되는지?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은 1월1일(또는 7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임
- 육아휴직자로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 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육아휴직수당은 ‘수당’의 한 종류로 ‘봉급’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 위 사례의 경우 ‘.....봉급이 지급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2 정근수당

Q A 2

질병휴직중인 자(2013.5월~11.31일까지)가 2013.7월, 2014.1월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 2013.5월~11.31일까지 질병휴직중인 자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일 2013.7월, 2014년 1월에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일부)되며 지급대상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여 정근수당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휴직 월 매월에 대하여 1/6씩 감하여 지급함

$$* \text{정근수당 지급액} = \frac{\text{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times \text{실제근무한 기간(개월)}}{6(\text{개월})}$$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2 정근수당

Q A 3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총2년/ 2011.6.1~2013.5.31)한 공무원이 2013.6.1자로 복직시, 2013.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 육아휴직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정근수당 계산을 위한 근무연수에 산입 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2012.6.1~2013.5.31)은 미산입하여 계산함.
- 또한 실제근무기간 계산시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최초 1년까지만 인정되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13년 6월분에 대하여 정근수당 1/6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2 정근수당

Q A 4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총 2년/ 2011.6.1~2013년.5.31)한 공무원이 2013.6.1자로 복직시, 2013.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은?

-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도 포함하므로
-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한 자에 대한 2013년 7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2 정근수당



Q A 5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3.6.15일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2013.7월 정근수당 지급은?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2013.7.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므로 전액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2 정근수당

Q A 6

토요일 및 공휴일로 인해 육아휴직 복직을 12.3일에 한 경우 다음해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 12.3일에 복직한 경우,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12.1~2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이었다고 해서 지급여부가 변경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2 정근수당

### 3. 가족수당

#### 《 개 요 》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별표 5

##### □ 지급요건

-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 지급인원

-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 단,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 하더라도 지급

##### □ 지급액

- 배우자 월 40,000원, 그 외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0,000원
- 셋째자녀의 경우 지급액 20,000원에 2011.12.31 이전 출생자는 30,000원 2011.1.1이후 출생자는 80,000원 가산하여 지급

##### □ 지급방법

-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1인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1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수령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의 필요로 인해 요양병원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부모가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경우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3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여 등제되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위 사례의 경우, '주소'가 같으나 '세대'가 같지 않은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 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4

공무원이 이혼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는 않으나,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할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함.
- 따라서 실제 자녀 양육을 이혼한 배우자가 하고 있다면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더라도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5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셋째 자녀가산금 지급여부는?

- 셋째 자녀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6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상에는 '동거인' 으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실제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친생자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 으로 되어있더라도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7

공무원이 4명의(배우자, 부, 모, 배우자의 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 따라서 5명에 대한 가족수당을 모두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Q A

8

공무원이 4명의(배우자, 부, 모, 자녀1) 가족수당을 지급받던 중 배우자의 어머니가 55세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는?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함.
- 이 경우에는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이 4명이하(배우자, 부, 모)이므로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Q A

9

부부가 부부공무원이고 자녀 1명을 양육할 경우, 본인은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수당을 나누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부부가 부부공무원인 때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본인과 배우자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 각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인 본인이 배우자 수당을, 배우자는 자녀수당을 지급받는 등과 같이 가족수당을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는 인정치 아니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Q A

10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 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배우자가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며, 가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Q A 11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1 가족수당

## 4. 자녀학비보조수당

### 《 개 요 》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 6

#### □ 지급대상

- 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 중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함)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 고등학교의 범위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함

#### □ 지급범위 및 지급액

- (범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 (지급액)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

※ (국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상한액 이내(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지급액 기준)

※ (재외공무원)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이내. 다만,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1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 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2 자녀학비보조수당



**2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수당지급이 가능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외한국학교 ('12.4월 기준))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 경 한국 학교 교 토 국 제 학교 오 사 카 금 강 학교 건 국 한국 학교	대 만	타이 뻬 이 한국 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까오슝한국국제학교	브라질	브 라 질 한국 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중 국	북 경 한국 국제 학교 연 변 한국 학교 천 진 한국 국제 학교 상 해 한국 국제 학교 무 석 한국 학교 홍 콩 한국 국제 학교 연 대 한국 학교 칭 다 오 청 운 한국 학교 대 련 한국 국제 학교 선 양 한국 국제 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사 우 디 아라비아	젯 다 한국 학교 리 야 드 한국 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이 란	테 헤 란 한국 학교
		태 국	방콕 한국 국제 학교	이집트	카 이 로 한국 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 한국 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국제학교

Q A 3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13.3.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는?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 후 국내로 복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 사례의 경우 3.1자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 되었으므로 월할 계산하여 기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 3월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2 자녀학비보조수당

Q A 4

영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국외파견된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여부는?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 공무원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국내공무원의 지급 방법에 따라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2 자녀학비보조수당

Q A 5

공무원의 자녀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으로 공납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방법은?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합산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2 자녀학비보조수당





6

공무원의 자녀가 2년과정으로 졸업을 하는 학교에 진학한 경우로 2년간 총 학비가 3년과정으로 졸업하는 학교의 총 학비와 비슷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3년 학제가 아닌 2년 학제의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간 상한액 범위내에서만 해당연도에 지원이 가능함
- 따라서 해당자녀가 재학하는 학교가 2년제 고등학교라고 해서 일반적인 3년제의 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간 상한액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2 자녀학비보조수당

## 5. 육아휴직 수당

### 《 개 요 》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 □ 지급대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 □ 지급액

- 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40퍼센트
  - (휴직중) 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 ※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
- (복직후)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지급함. 다만,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1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즉, 임신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 또한 첫째, 둘째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



2 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함
- 다만,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3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은?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4

6개월간('13.1.1~'13.6.30)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능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계산방법은? (수당 총지급액이 50만원 미만사례)

-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9급 1호봉 기본급(1,203,500원)의 40퍼센트는 481,400원이나, 육아휴직 수당 하한액이 50만원 이므로 육아휴직기간('13.1.1~'13.6.30) 동안 월 500,000원을 지급함
- 다만, 육아휴직수당이 50만원 미만임에도 하한액인 50만원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하였으므로, 복직 후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은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5

1년간('13.1.1~'13.12.31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5급 10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수당 총지급액이 100만원 이상 사례)

-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행정직 5급 10호봉 기본급(2,878,900원)의 40퍼센트는 1,151,560원이나,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100만원 이므로 육아휴직 수당 총지급액은 100만원임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13.1.1~'13.12.31) 중에는 총지급액 100만원에서 15%를 뺀 85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15%에 해당하는 금액(18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6

1년간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한 공무원이 복직하여 3개월간 근무후 다시 둘째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15%에 대한 일시금 지급방법은?

-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후 3개월간 근무후 다시 둘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였으므로
-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첫째자녀에 대한 일시금과 둘째자녀에 대한 일시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Q A

7

첫째자녀 출산후 복직하여 5개월 근무 후 둘째출산을 위해 출산 휴가를 3개월간 사용한 경우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 15%에 대한 일시금을 출산휴가중에 받을 수 있는지?

-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며
- 출산휴가기간은 유급 특별휴가의 한 종류이므로, 근무 개월수 계산시 출산 휴가기간도 포함됨
- 따라서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육아휴직수당 15%에 대한 일시금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Q A

8

육아휴직을 사용한 A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복직후 3개월간 근무 후, B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지급 기관은?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으나, 해당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직중인 B부처에서 '육아휴직 수당 중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를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Q A

9

육아휴직 중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을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법은?

-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므로
- 육아휴직중에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경우에도, 휴직 개시일 기준인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보수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III-4 육아휴직수당

## 6. 위험근무수당

### 《 개 요 》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 지급대상

-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기준

-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9의 각 부문과 등급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 □ 지급방법

-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Q A 1

보일러 비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을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1 위험근무수당

Q A 2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에 행정직공무원이 종사할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대상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건은 위험한 직무인지, 상시 종사하는지,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임
- “위험한 직무”인지 여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의 각 부문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함
- 따라서 해당 종사자가 어떤 “직렬”인지는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1 위험근무수당

Q A 3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보일러 장치 가동 및 관리업무에 해당 업무 자격증 미소지자가 종사할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위험근무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대상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단 요건은 위험한 직무인지, 상시 종사하는지, 직접 종사하는지 여부임
- 따라서 해당 업무가 통상적으로 자격증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업무를 맡기는 것이 적절한 인사 운영 형태인지는 논외로 하고볼 때,
- 상기 요건에 충족하면 위험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종사자가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 하였는지 여부는 위험근무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1 위험근무수당

Q A 4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방사선을 취급하여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⑨항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1 위험근무수당

## 7. 특수업무수당

### 《 개 요 》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 □ 지급대상

- 영 별표 11에서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방법

- 영 별표 11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
- 단, 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

Q A 1

전산직 공무원으로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1)~11)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수당지급 방법은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외의 수당일 경우,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Q A 2

해당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일반직 기술직군 4급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 지급여부는?

- 4급 공무원에게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일 경우 지급하던 것을, '13년 관련규정 개정으로 4급 공무원의 경우 해당업무 담당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직군'인 경우에는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Q A 3

시설직 공무원이 직렬과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을 경우 특수업무수당 중 1. 기술분야 기술정보수당 1)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11에 의해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정보수당은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상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1)~1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 기술정보수당중 지급대상 1)에 해당하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같은 영 별표 2의 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 위생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기술정보수당은
- 당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렬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직렬과 유관한 업무에 종사할 것'은 지급요건으로 하고있지 않으므로
- 해당공무원의 유관업무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직렬의 공무원에게는 기술정보수당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Q A 4

일반 행정직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특수업무수당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 기술분야 중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1)~6)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 지급대상 1)~6)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Q A 5

공업직 공무원으로 소방관련법에 의한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특수업무수당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 기술분야 중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1)~6)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Q A 6

공업직 공무원이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자로 자격증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특수업무수당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 기술분야 중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1)~6)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직무와 무관한 분야의 자격증이더라도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Q A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받던 공무원이 기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하였을 경우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방법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해서 가산금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8

기술정보수당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고 있는 운전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가산금 병급 지급이 가능한지?

- 특수업무수당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1. 기술분야 중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1)~6)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병급(중복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취득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이라면, 운전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 외에도 해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9

국가직 기능직(사무직군,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전산업무를 맡고 있으며(현재 전산업무수당 지급받고 있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에 의해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은 별표 11의 제1호 1)~1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위 사례에서 지급받는 전산업무수당은 별표 11의 제1호 1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술정보수당의 한 종류임,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별표 11의 제1호 1)~11)중 1)~6)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가산금이므로, 별표 11의 제1호 11)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Q  
A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직위는 4급상당(부서장)이고 호봉확정시 적용되는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연구관으로 5급상당이 적용될 경우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 방법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에 의해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중 개방형직위 보전수당과 관련하여,
- 위 사례의 경우 4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었으므로 4급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2 특수업무수당

## 7. 초과근무수당

### 《 개 요 》

####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 지급대상

- 영 제15조 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 초과근무수당 종류

-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함

#### □ 지급방법

- 일반대상자의 정액분 지급방법(월 10시간)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

※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에는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

○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함
- 다만, 식사·수면·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음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 (국내) 출장중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인정

\*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VI. 7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국외) 인정하지 않음

**Q** 1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시 초과근무 실적시간 인정여부는?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가 인정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2

외출 또는 반일연가 사용일이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에 포함되는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해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경우,
-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시간외 근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되나,
-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액시간 지급을 위한 출근일수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3

휴일에 교육 및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경우 시간외 근무 인정여부는?

-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초과근무는 본연의 업무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참석 및 기관행사에 참여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4

**현업대상자가 근무중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외출한 경우에 초과 근무시간 계산방법은?**

- 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은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빼 시간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계산시 동 규정 14조에 따른 휴가기간은 제외함.
-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계산함.
- 현업공무원의 외출시에도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외출한 시간을 빼고 계산하며, 해당 외출시간은 총 근무시간에도 포함하지 않음.

※ 참고 :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

$$\text{시간외근무시간} = \text{실제 총근무시간(월간)} - \{ \text{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월간)} + \text{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text{식사시간(월간)} + \text{수면시간(월간)} + \text{휴식시간(월간)} \}$$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5

**휴직 등의 사유로 현업공무원의 업무를 일반대상자가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방법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현업기관 및 직무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 또는 부서 또는 해당 업무 종사자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정하여야 하며
- 이러한 지정 절차 없이 일반공무원이 현업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현업공무원의 근무형태로 근무를 한다고 해서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6

**일반대상자인 공무원이 휴일에 나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휴일근무수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1호 또는 2호에 따른 현업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므로, 일반대상자인 공무원이 휴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 일반대상자에게는 휴일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이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7

**현업공무원이 휴일에 시간외근무를 5시간 하였을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9시부터 18시까지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8

**휴일에 소속과장과 기관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을 다녀 올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인정 할 수 있는지?**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외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출장비와 병급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해당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9

###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인정 할 수 있는지?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 관내출장의 경우 출장후에 사무실에 복귀하였다면 출장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시간외근무가 이루어 졌다면 초과근무가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10

### 근무지외 출장 경우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병급 인정 할 수 있는지?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일반적으로 관외출장의 경우 하루단위로 발령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출장중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인정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11

당직근무 익일에 오전 근무후 오후에 휴무를 실시할 경우 오전에 근무한 4시간에 대해 초과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숙직근무자에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오전 휴무, 오후 휴무) 또는 근무일 전체를 휴무하게 하고 있으나,
- 숙직 근무후 평일 일과시간 중 휴무를 명령 받은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이에 대해 초과근무로 인정하지는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12

월중 승진자의(일반대상자)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은?

- 월중 승진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 계산시, 승진일자를 기준으로 승진 전·후 초과근무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이 원칙이나, 승진 전·후 초과근무 시간 중 분 단위 시간은 승진 전·후분 중 더 많은 쪽에 합산하여 계산.
- 정액분 계산시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근무일수로 계산함

※ 정액분 계산 예시

- 승진 후 출근일수 15일 이상일 경우 : 정액분 10시간 계산시 승진후 단가 적용
- 승진 후 출근 12일, 승진 전 출근 8일 :  $(10 \times 12 / 15 \times \text{승진후 단가}) + (10 \times 3 / 15 \times \text{승진전 단가})$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13

초과근무 시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고, 보조수단으로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e-사람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였으나 지문을 미입력한 사례, 지문은 입력하였으나 e-사람을 미입력한 사례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인정방법은?

- 초과근무수당과 관리시, e-사람, NEIS, 지문·정맥·홍채인식기, 개인별 자기 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 위 사례에서처럼 2개 이상의 전산시스템을 병행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경우에 각각의 전산시스템간의 초과근무 기록이 상이할 경우에 어떤 시스템의 초과근무 기록을 우선 적용할지 여부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자체 내부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1 시간외근무수당

Q A

14 교육파견 기간 중 교육이 없는 주말에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는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교육 파견기간 중에는 파견 기관의 장에게 복무관리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 중에는 소속 부서장이 초과근무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교육기간 중 교육이 없는 주말에 이루어진 초과근무도 인정되지 않으며,
- 교육 종료일의 교육 종료시간 이후부터 초과근무가 가능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제3장

## 8. 실비변상

### 《 개 요 》

#### □ 연가보상비

- 법적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급대상
  - 1급 이하, 고위공무원단,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군인
- 계산방법
  - 보상일수 계산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frac{12\text{개월} - \text{제외기간(개월)}}{12\text{개월}}$
---------------	---

#### - 지급액 계산

- 6월 30일 기준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금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 12월 31일 기준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금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1** 기능직공무원이 3.31일에 퇴직하고 4.1일자로 일반직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은?

- 퇴직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연가일수 및 연가사용 일수가 승계됨
-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따라서 3월에 별도로 연가보상비를 정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I-3 연가보상비



## 2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의 연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은?

- 육아휴직 전에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일수내에서 연가를 모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연가보상비 산정을 위한 연가보상일수 산정시에는 휴직기간을 제외 기간으로 보아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text{연가보상일수} = \text{미사용연가일수} \times \frac{12\text{개월}-\text{제외기간}}{12\text{개월}}$$

【관련 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VII-3 연가보상비

# 제3장 공무원 예비업무 Q & A

## 목 차

I. 공무원 예비제도 개요 .....	93
II. 공무원 예비제도 질의응답 사례 .....	94
1. 근무지내 국내출장 .....	94
1. 서울청사에서 과천시청으로의 출장(왕복 약 44km)을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95
2.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시, 반드시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95
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95
4.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96
5.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의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	96
6. 오전에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의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96
7. 근무지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	97
8. 근무지내 출장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97

- 9.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97
- 10.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 97
- 11.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98
- 12. 공무원 「갑」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방법은? ..... 98
- 13.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과 관련하여,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 99

**2. 근무지외 국내출장** ..... 100

**가. 운임비, 일비** ..... 101

- 1.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여부는? ..... 101
- 2. 서울소재 기관 근무자가 5.1~5.5 부산출장(KTX이용), 5.6~5.15 제주출장(공무 항공마일리지 이용한 보너스항공권 확보)을 다녀온 경우,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 102
- 3. 개인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후 출장을 다녀온 경우, 해당 보너스 항공권에 상응한 항공운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102
- 4.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102
- 5.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 103

6. 근무지는 서울청사(서울),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서울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 방법은? ..... 103
7.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의 출장시 근무지는 서울청사, 출발지는 과천소재 거주지, 출장목적지는 대전청사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 103
8.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의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방법은? ... 104
9.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철도이용계약에 따른 KTX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 104
10.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시, 공무형편상 부득이 제주도내에서의 이동은 렌트차량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104
11. 국립대 교수가 근무지의 소재 대학에서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강사초빙을 받아 강의를 한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05
12. 공무원이 근무지외에서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할 경우, 운임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105
13. 섬 지역으로 근무지외 출장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방법은? ..... 105
14.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105
15.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 106
16.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은? ... 106



17. 공사감독관으로서 체재비(시설부대비 420-05목)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공사감독현장에서 타 지역으로 근무지의 출장을 갈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107
18.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 107
19.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의 출장시, 개인별로 각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방법은? ..... 107
20. 공무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지? ..... 108
21.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시 일비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해야 하는지? ..... 108
22.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세종시인 공무원이, 근무지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소재 기관인 국회 등에 출장 후 근무지인 세종시로 복귀하는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108
23.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 109
24.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시에도 항공운임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 109
25. 철도이용계약이 체결되어있으나, 출장시 할인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운임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 109

**나. 식비** ..... 110

1. 120km 미만 출장시 식비감액제도(1/3만 지급)가 폐지되었는데, 식비(2만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110

2. 근무지의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여부 및 이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식비의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 110
3. 1박2일 근무지의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 받은 경우, 식비 지급방법은? … 110
4.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는 감액토록 되어있는데, 식비와 숙박비도 감액해야 하는지? … 111

**다. 숙박비** … 111

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이 공동숙박(20만원)하고, “교사(여) 5명”이 공동숙박(20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추가지급액은? … 111
2. 1박2일 근무지의 출장시, 자가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112
3. 공무원이 산·학·연 논문심사의 건으로 근무지의 출장(1박2일)시, 해당 주관기관에서 심사비를 지급받은 경우, 여비 지급방법은? … 112
4.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1박2일 숙박비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액은? … 112
5. 근무지의 출장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 113
6. 공무원이 2박3일의 제주도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 113
7.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113
8. 기상악화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 113
9. 출장지가 아닌 출장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 114

10. 2박을 하면서 첫째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114
11. 영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 114
12.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 115
13.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실비정산 여부는? ..... 115
14. 서울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갑」이 3박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째날은 5만원, 둘째날은 8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날은 친지 숙박을 한 경우, 친지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 115

### 3. 국외 출장 ..... 116

#### 가. 운임비, 일비 ..... 117

1. 국외출장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일비와 국외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117
2. 국외출장시 대전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117
3.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117
4. 국외출장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 117
5. 여행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의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적용 여부는? ..... 118
6. 국외 출장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승급 대상 및 요건은? ..... 118
7. 총 4박5일(3.1 ~ 3.3 서울 → 도쿄, 3.3 ~ 3.5 도쿄 → 베이징 → 서울) 출장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 118

**나. 식비** ..... 119

1.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 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119
2. 국외여비는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 119
3. 상급자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119

**다. 숙박비** ..... 120

1. 국외출장 후 여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既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 120
2.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은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은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 120
3.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 120
4. 스페인으로 2박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 121
5.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에서는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121
6. 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 121
7.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 방법은? ..... 121
8.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매도율(현찰사실때)과 현찰매입률(현찰과실 때)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122

**라. 국외출장 준비금** ..... 122

1. 1개월전 '말레이시아'로의 국외출장시에 준비금을 지급 받았는데, '인도네시아'로의 국외출장시 다시 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122
2. 여행자보험료도 국외출장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122
3.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서울소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123

**4.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124

**가. 부임여비** ..... 124

1. 대전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대구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대구)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방법은? ..... 124
2. 서울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A(서울 거주)와 B(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124
3. 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관은? · 125

**나. 국내 이전비** ..... 125

1. 서울시 소재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종전 거주지(또는 주민등록지)인 원주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126
2. 전주의 A기관에서 춘천의 B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가정형편(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상 실제 이사는 서울로 하고, 인사발령 후에는 춘천소재 관사, 하숙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로의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126

3.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126
4.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127
5. 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127
6. 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127
7. 부산소재 A기관에서 대구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13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동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동년 11월 30일에 복직한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128
8. 섬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 또는 이전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한 경우, 도선료 지급이 가능한지? ..... 128

**다. 국외 이전비** ..... 128

1.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실제 이사일은 6월 1일인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129
2. 외국으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지? .. 129
3.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부임명령을 받아 15m<sup>3</sup> 이사화물을 \$5,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 129
4. 공무원 「을」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m<sup>3</sup>의 이사화물을 \$7,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 130

**라. 국내 가족여비** ..... 131

1. 서울(전임지)에서 대전(신임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인근 공주시(거주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131

**마. 국외 가족여비** ..... 131

1.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귀국하면서, 런던에서 유학중인 20세의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올 경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132
2.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세의 자녀를 근무지로 불러올 경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132
3.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의 재외공무원이 가족 동반으로 전지 휴양 등을 갈 수 있는 횟수 및 여비지급액은? ..... 132

**5. 기타** ..... 133

1. 공무원 「갑」이 허위출장으로 8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방법은? ..... 133
2. 외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국내에서의 여비 지급방법은? ..... 133
3. 과장급공무원(제2호가목)이 국장급(제1호라목) 직위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무대리중인 과장급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어느 직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133
4. 2박3일 근무지의 출장시, 친지숙박을 하여 숙박비 영수증이 없고, 출장 첫날과 마지막날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없는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134

1. 근거규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예규)
2. 여비등급 :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3. 여비항목별 지급액

구 분		지급항목	지급방법	지급액	
출장	국내 출장	근무지내 출장	근무지내 여비	정액 1만원(4시간미만), 2만원(4시간이상) *공용차량 이용시 1만원 삭감 *왕복 2km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근무지외 출장	운임	실비	· 제1호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 제2호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에 따름
			숙박비	실비(1夜당)	· 제1호 : 실비 · 제2호 : 4만원(특별시 및 광역시 5만원) 상한범위내 실비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지급 가능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등에서 숙박시 1夜당 2만원지급
			일비	정액(1日당)	2만원 *공용차량 이용시 1/2삭감
		식비	정액(1日당)	제1호 : 2.5만원, 제2호 : 2만원	
	국외출장	운임	정액	항공운임 지급기준 : 장관급이상 1등석, 차관급~국장급 비즈니스석, 과장급이하 2등석 *철도, 선박 및 자동차운임은 실비지급	
		숙박비	실비 (1夜당)	\$471~\$71 상한범위내 실비 *4개 지역에 따라 6개 계급별로 차등 실비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일비	정액 (1日당)	\$60~\$26 * 6개 계급별로 차등 지급	
		식비	정액 (1日당)	\$186~\$30 *4개 지역에 따라 6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준비금	실비	국외출장시마다 실비로 지급(실비정산) *비자발급,예방접종,여행자보험,풍토병예방약 구입(4종)	
근무지 변경 (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가족여비		* (본인) 국내외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 (가족) 운임은 본인과 같은 등급, 일비·식비·숙박비는 12세 이상은 본인의 2/3, 12세 미만은 1/3		
	이전비	실비 (화물량)	· 국내는 5톤은 실비, 5톤 초과 7.5톤은 실비의 50% · 국외는 15m <sup>3</sup> 은 실비, 16~25m <sup>3</sup> (상한)은 실비의 80%		



\* Q&A 사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5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함

## 1. 근무지내 국내출장

### 《 개 요 》

#### ○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 가능

#### ○ 여비지급 기준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km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함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원을 넘지 못함(출장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1일 1만원을 넘지 못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

#### ○ 예외적용 대상

- 제외대상 : 전용차량 배정자(장·차관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내 지급방법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  
또한, 근무지외 출장시에는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지급 가능하며,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액 후 지급

- 1만원 감액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예) 업무용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 1만원 지급(2만원 - 1만원), 4시간 미만의 근무지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1만원 - 1만원)

Q A 1

서울청사에서 과천시청으로의 출장(왕복 약 44km)을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근무지내 출장은 같은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함.
-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라도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1-라

Q A 2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시, 반드시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규정 §28조①항

Q A 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함.
- 다만,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28조①항



4

**운전원이 근무지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운전원의 수행업무가 복무상 출장으로 인정되어 4시간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명령에 따른 차량운행인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2-라



5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의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 운전원이라도 근무지의 출장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숙박비(실비, 출장지역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 한도), 일비(정액, 1만원×2일), 식비(정액, 2만원×2일)를 지급함.
  - \* 공용차량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일비는 1일당 2만원 중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 다만, 식비의 경우에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해야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2-다, 라



6

**오전에 근무지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의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
-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과 근무지의 출장의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의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내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의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의 출장 식비는 근무지의 출장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2(또는 2/3) 감액한 1만원(또는 6,660원)을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2-가, IV-1-나



7

근무지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방법은?

-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2만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II-1-가



8

근무지내 출장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국내·외 출장 및 근무지내, 근무지의 출장을 불문하고, 차량임차료는 여비 예산 항목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임차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무지의 출장 또는 국외출장시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운임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는 지급 가능함(단, 일비 1/2 감액). 그러나,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는 정액(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의 운임비는 지급하지 않음(단, 임차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1만원 감액)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1, IV-5-나, V-5-가-4



9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근무지내 출장시 원칙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숙박비 지급을 할 수 있음.

【인정 사례】 G20비상근무 경호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성과급여기획과-2975, '10.11.1)



10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2회 이상의 근무지내 출장으로 인해 총 출장시간이 6시간이라도 2만원만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2-나

Q A 11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원만 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지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가고, 각각의 출장시간을 모두 합하면 4시간 이상인 경우]
  - 출장시간을 합산하여 출장여비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1만원만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2-나

Q A 12

공무원 「갑」 이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 [지급기준]
  - 4시간 미만 출장 : 운임에 대해서만 1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4시간 이상 출장 : 운임 및 식비에 대해서 2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 식비는 제1호는 8,330원, 제2호는 6,660원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 지급(증거서류가 없으면 지급 불가)
- [지급예외]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적용시기] 2013년 1월 9일부터 시행되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3월 1일 이후 근거리 출장을 가는 사람부터 적용도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2-마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과 관련하여,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Q A 13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보 출장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함.
- 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http://www.roadplus.co.kr))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2-마

## 2. 근무지외 국내출장

### 《 개 요 》

- 개념 :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 여비등급 구분표(영 별표1)

제1호	가목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
	나목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차관
	다목	차관급, 1급 공무원, 고위공무원 가급, 10호봉 이상의 검사·헌법연구관, 치안총감, 중장·소장·준장 등
	라목	3급 이상 공무원(국장급), 고위공무원 나급, 9호봉 이하의 검사·헌법연구관, 시군구 교육장, 교장
제2호	가목	3급 공무원(과장급) 및 4·5급 공무원,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교사
	나목	6급 이하 공무원

- 여비항목 :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구 분	일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숙박비 (1夜당)	운 임			
				철 도	선 박	항공	자동차
국장급이상	2만원	2.5만원	실비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과장급이하	2만원	2만원	실비(4만원 한도) *특별·광역시는 5만원 한도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 운임비 : 실비정산

-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국외출장 동일)

항 공 운 임	구 분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좌석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중간정액 이상자를 상급좌석 대상자로 봄

-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 국내·외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시 공무원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승급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함
  - 출장자는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승급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철도운임 : 특실(국장급 이상), 일반실(과장급 이하)
- 선박운임 : 1등급(국장급 이상), 2등급(과장급 이하)
- **일비 : 정액지급**
  - 지급기준 : 1일당 2만원 정액
  - 일비 추가지급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 동일지역 장기체재시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 **숙박비 : 실비정산**
  - 국장급 이상 : 상한액 없음
    - \* 단,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 가능
  - 과장급 이하 : 4만원(특별·광역시 5만원) 범위내 실비 정산
    - \* 단,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범위내(1.2만원) 추가지급 가능(특별·광역시 1.5만원)
- **식비 : 정액지급**
  - 국장급 이상 : 2.5만원 / 과장급 이하 : 2만원

## 가. 운임비, 일비

Q A 1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여부는?

- 공무상 출장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비를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가-3)



서울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 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



2

- 5.1~5.5 부산출장(KTX 이용) / 5.6~5.15 제주출장(항공기 이용)

\* 단, 부산 → 제주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이코노미 16만 상당) 이용, 제주 → 서울은 공무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 당초 일비 : 30만원(=2만원×15일)
- 부산→제주구간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함에 따라 항공운임비(16만원)가 절약되었으므로, 1일당 일비의 50% 추가지급이 가능함(10만원(2만원×50%×10일)). 그러나,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만원(절약된 항공요금 16만원의 50%)만 지급
- 총 지급 일비 : 38만원(=30만원+8만원)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5-가-1)



3

개인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후 출장을 다녀온 경우, 해당 보너스 항공권에 상응한 항공운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항공기 이용 출장의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 취지상, 출장공무원의 개인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보너스 항공권에 상응하는 항공운임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을 위해 공무 항공마일리지 이외에 추가로 개인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일비를 50% 추가지급함.(단,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12조③항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 IV-5-가



4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국내·외 출장을 불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함.
- 국내선의 경우, 출장자는 ① 「e-사람」 상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보유내역, ②보너스 항공권 이용 가능여부(인터넷 예매시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 확인)를 확인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만일,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항공사 사정(보너스 좌석없음, 좌석 승급 불가)으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여 항공운임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를 이용(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 가능)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12조③항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 IV-5-가

Q A 5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시, 보유하고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 영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국내선을 이용한 출장시,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5,000마일이 넘어 보너스좌석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2등석(Economy Class) 보너스좌석을 구매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항공사 사정으로 해당 등급의 좌석인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한 단계 높은 중간석(Business Class)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있음.
- 아울러 항공사 사정으로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어 2등석 대신 중간석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보유한 마일리지가 다소 부족하여 중간석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등석 항공운임 정액을 지급받고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중간석 좌석으로 승급하는 것도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12조③항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

Q A 6

근무지는 서울청사(서울),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서울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 방법은?

- 운임비 :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운임비는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운임비를 지급함. 다만, 당초 출발일(월요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할증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숙박비 : 자가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가-2), IV-3-가-1)

Q A 7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의 출장시 근무지는 서울청사, 출발지는 과천 소재 거주지, 출장목적지는 대전청사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 거리계산은 근무지와 출장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Daum, Naver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함.
- 다만, '근무지-출장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사례의 경우에는 '과천↔대전청사'를 기준으로 거리계산을 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3-다, IV-2-라-2)

**Q A 8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의 출장을 간 경우, 운임비 지급방법은?**

-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의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자동차 운임비를 지급하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2)

**Q A 9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철도이용계약에 따른 KTX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 철도이용계약을 통한 철도요금 할인은 공무상 출장의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적인 대학교 출강은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TX 할인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담당직무 수행 목적상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외부강의는 출장처리가 가능하므로 출장여비 지급.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 정부-코레일간 철도이용계약 §3조③항

**Q A 10 국립대 교수가 근무지의 소재 대학에서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강사 초빙을 받아 강의를 한 경우,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무지의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바, 사례의 경우에는 운임비를 제외한 식비(2만원 정액), 일비(1만원 : 공용차량 이용에 준하여 2만원의 1/2지급)를 지급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5-나

Q A 11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할 경우, 운임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내 또는 근무지의 출장 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중복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Q A 12

섬 지역으로 근무지의 출장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방법은?

-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시 발생한 도선료는 운임비 지급대상이므로 만일, 개인 차량 이용이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도선료(영수증 금액)를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나-2)

Q A 13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의 출장을 다녀 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개인차량 이용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2)-나)

Q A 14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가-2)



15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방법은?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여비는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함.
- 따라서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결국 대전 ↔ 대구의 운임비(예매사이트에서 금액확인)를 지급하여야 함.
- 증거서류는 서울 ↔ 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3-다



16

공사감독관으로서 체재비(시설부대비 420-05목)를 지급받는 공무원이 공사감독현장에서 타 지역으로 근무지의 출장을 갈 경우, 운임비 등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체재비는 여비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항목에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임.
- 비록 체재비(식비, 일비, 숙박비)의 지급방식이 여비규정(제16조, 제17조)을 준용하고 있으나, 체재비는 출장명령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여비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바, 근무지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임비, 일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체재비 중 출장여비와 중복되는 항목은 지급할 수 없음.

예시1) 세종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1일 체재비가 숙박비 4만원, 식비 2만원, 일비 1.4만원(장기체제로 3/10 감액된 경우 가정)인 공무원이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자가숙박)로 출장을 갈 경우, 지급받는 여비는 KTX 운임비 3만원, 식비 2만원, 일비 2만원이며, 해당 출장일과 중복되는 체재비(식비 2만원, 일비 1.4만원, 숙박비 4만원)는 지급하지 않음.

예시2) 예시1의 공무원이 세종시 건설현장 인근(근무지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체재비로 이미 일비(1.4만원)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근무지내 출장여비(2만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음.

【관련 규정】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202) / 공무원 여비규정 §28조①항

Q A 17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 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 일비는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개인차량 제외)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지급함.
- 따라서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첫날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5-나

Q A 18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의 출장시, 개인별로 각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방법은?

- 차량임차료는 여비예산 항목이 아니므로 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사례의 경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별로 운임을 각출하기로 하고 차량 공동임대라는 형식만을 빌려 단체로 이동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버스 이용료에 대한 개인별 분담금액을 운임으로 사후지급할 수 있으며, 버스 이용료 관련 자료를 운임 지급 증거 서류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버스 이용료 개인별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운임은 해당 출장 구간 대중교통요금 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이 경우, 별도 예산에 의한 차량 임차가 아니므로 일비는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은 아니지만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동 이용한 버스의 출장수행상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비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1/2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 VIII-1-가

Q A 19

공무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지?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 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서의 주차영수증 등 다른 증거서류로도 인정 가능 함.
- 참고로, 연료비 이외에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 영수증(하이패스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해당사이트에서 사용내역 출력)과 주차영수증이 있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

**Q A 20**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시 일비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해야 하는지?

- 자가용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이용시 일비는 감액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5-나

**Q A 21**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세종시인 공무원이, 근무지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소재 기관인 국회 등에 출장 후 근무지인 세종시로 복귀하는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근무지는 세종시, 출장지는 서울(국회)이므로 근무지의 출장으로 처리하되, 숙박비(자가숙박) 및 거주지(서울)에서 출장지(국회)로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출장 후 세종시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출장비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3-다

**Q A 22**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 오송역(청원군)에서 세종시,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의 교통비는 운임(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택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또는 버스)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할 수 없음. 다만, 택시비가 소요된 경우에는 당해구간의 대중교통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1, II-4-나, IV-2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시, 항공료(왕복 20만원) 이외에 공무

**Q A 23** 형편상 부득이 제주도 내에서의 이동은 렌트차량(1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지급대상 : 항공료(20만원), 숙박비(4만원 상한 × 1박), 일비(총 3만원 : 1일차 2만원, 2일차 렌트차량 이용일 1만원), 식비(2만원 × 2일), 운임비 (렌트차량 운행시 발생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 미지급대상 : 렌트차량 임차비는 여비지급 항목이 아님

[주의]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받아 렌트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에 준하여 해당 차량 이용일에 일비 1만원 감액, 개인비용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일비 2만원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1-가, IV-5-나

**Q A 24**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시에도 항공운임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 국내 출장시 항공을 이용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실비 지급이 가능함. 다만,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출장시에는 기차 또는 고속버스가 일반적인 운송 수단이므로,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저비용항공사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 되는 경우에는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육로 여행시에도 항공기 이용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

**Q A 25** 철도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출장시 할인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운임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 철도이용계약(한국철도공사)이 체결 되어 있어,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할인된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결정된 출장, 예상치 못한 출장계획 변경 등에 의한 역창구 발권 등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할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지 못한 금액으로의 지급이 가능함. 이때, 단순히 출장지에서의 복귀시간이 불명확하다거나 당초 예정된 출장일정이 1~2시간 정도 조기 종료되는 등의 사정변경은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가-2)



## 나. 식비

Q A 1

식비감액제도(120km미만 출장시 식비의 1/3만 지급)가 폐지되었는데, 식비(2만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식비감액제도가 현재의 교통발달 수준과 괴리되어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폐지키로 한 바, 향후 근무지의 출장시 원칙적으로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여비부족 등이 예상되는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식비를 감액할 수 있음.
- 한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Ⅲ-1-라)에 따라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Ⅲ-1-라, Ⅳ-1-나

Q A 2

근무지의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및 이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식비의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 근무지의 출장일 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근무지의 출장여비로 지급받은 식비(2만원)와 중복되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근매식비 지급분 만큼 근무지의 출장 식비를 감액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 제6장 /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기준 Ⅷ-2-바

Q A 3

1박2일 근무지의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 받은 경우, 식비 지급방법은?

-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하여 지급함.
- 사례의 경우, 첫날에는 식비정액분(2만원)의 1/3을 식비로 지급(6,660원)하고, 다음날에 대해서는 식비정액분의 2/3를 식비로 지급(13,330원)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



4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는 감액토록 되어있는데, 식비와 숙박비도 감액해야 하는지?

- 국내·외 출장시,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에 의해 체재일수에 따라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식비와 숙박비는 감액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5-다, V-5-나, 공무원 여비규정 §17조

## 다. 숙박비



1

그룹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이 공동숙박(20만원)”하고, 그룹2 “교사(여) 5명”이 공동숙박(20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추가지급액은?

- 2인이상 공동 숙박시, 총 숙박비를 [6만원x(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6만원)] 범위 내에서 인원수 당 20,000원(1夜 기준)을 공동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 영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해당자의 경우 ‘6만원’, 제2호는 ‘4만원(특별시·광역시는 5만원)’임
  - \*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해당자가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6만원’을 기준으로 함
- [그룹1의 경우] 영 별표1의 제1호인 교장이 포함된 경우로 총숙박비 20만원이 “6만원x(5-1)=24만원”보다 적으므로 해당 공동숙박조에 대하여 추가여비지급이 가능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계산 : 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6만원)  
= 5명 - (20만원 ÷ 6만원) = 5명 - 3.33명 = 5명 - 4명 = 1명
  - 공동숙박조에 대한 추가지급액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 2만원  
= 1명 × 2만원 = 2만원 ⇒ 2만원/5명 ⇒ 1인당 4천원 지급
- [그룹2의 경우] 총 숙박비(20만원)를 16만원[4만원x(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여비지급 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다-3)

**Q A 2 1박2일 근무지의 출장시, 자가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자가숙박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 친척, 친구 집에서 숙박시에는 1夜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을 감안한 것임. 그러나 자가숙박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다-3)

**Q A 3 공무원이 산·학·연 논문심사의 건으로 근무지의 출장(1박2일)을 다녀온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심사비를 지급받았다면, 숙박비(실비 4만원), 일비(2만원×2일), 운임비(실비 3만원) 등 여비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심사비가 순수 심사비용인 경우에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심사비에 운임비, 식사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함.
- 사례의 경우, 여비지출 담당자는 해당 주관기관에 심사비 내역을 확인한 후 순수 심사에 대한 사례비라면, 숙박비, 일비, 운임비 등 총 11만원을 지급함.
- 만일 심사비에 운임비(2만원이라고 가정)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운임비를 제외한 후 9만원만 지급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1, VIII-1-가

**Q A 4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1박2일 숙박비로 10만원을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액은?**

-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내부기준(각 부처는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 없는 한, 10만원을 전액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3-가-1)

Q A 5

근무지의 출장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출장지역에 따라 12,000원 또는 15,000원)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3-나-3)

Q A 6

공무원이 2박3일의 제주도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3만5천원, 둘째날은 4만3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 제주도는 숙박비 상한액이 1야당 4만원이므로, 2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상한액은 8만원임
- 사례의 경우, 8만원 상한액 범위내 실제 소요된 78,000원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3-가-1)

Q A 7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해당일의 숙박비를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3-나-2)

Q A 8

기상악화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 일수에 포함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추가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추가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3-나

Q A 9

**출장지가 아닌 출장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 출장지는 아니나 출장경로상의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다면, 출장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출장지보다 숙박비 실비상한액이 더 높은 지역에서 숙박한 경우라도 출장지를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관 담당자가 출장수행에 필요한 숙박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나

Q A 10

**2박을 하면서 첫째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출장일 중 첫째날에 출장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결제하여 증거서류가 첫째날 밖에 없더라도, 숙박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결제하여 청구하였다면 결제금액 모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3-가-1)

Q A 11

**영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5만원인 특별시 및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숙박비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 개정규정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 및 광역시로 출장가서 숙박하는 공무원에 적용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3-가

**Q A 12**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방법은?

- 출장지가 도서벽지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따른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숙박업소가 간이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는 민박집 등인 경우 숙박업소 주인의 확인증과 출장자의 소명서를 근거로 확인서 상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1)

**Q A 13**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실비정산 여부는?

-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감사업무 담당자의 경우, 4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한도내에서 숙박비 실비정산 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구 분	운 입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 해당자	정 액	4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 해당자	정 액	30,000원	20,000원	20,000원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5)

**Q A 14** 서울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갑」이 3박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5만원, 둘째날은 8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날은 친지숙박을 한 경우, 친지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 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출장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예산절감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과 친지숙박으로 인해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에 대한 실비보전적인 측면에서 1야(1박)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사례의 경우, 출장 첫날과 둘째날의 숙박비 지출 합계액이 13만원으로 광역시 지역의 2일간 숙박비 상한액 10만원을 초과함으로써 광역시지역의 1박당 숙박비 상한액인 5만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없으므로, 사실상 셋째날도 숙박비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숙박비 지출이 필요한 날임에도,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친지숙박비 지급제도의 취지상 공무원 「갑」은 친지숙박비 정산신청을 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3)

### 3. 국외 출장

#### 《 개 요 》

##### ○ 제도 개요

- 개념 : 공무상 출장명령으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 여비항목 :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 ○ 운임비 : 실비

- 철도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 선박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항 공 운 임	구 분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좌석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중간정액 이상자를 상급좌석 대상자로 봄

##### ○ 일비 : 6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26\$ ~ 60\$)

- 일비 추가지급 :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 일비 감액

-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 동일지역 장기체재시 정액대비 1/10 ~ 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 ○ 숙박비 : 4개 지역별(가~라), 6개 계급별로 실비상한액 범위내에서 차등 지급

##### ○ 식 비 : 4개 지역별(가~라), 6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 지급

##### ○ 준비금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예방접종비, 풍토병예방약 구입비 실비지급

## 가. 운임비, 일비

Q A 1

국외출장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일비와 국외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국외여행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5-가-4)

Q A 2

국외출장시 대전 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국외출장비 일비에서 당일 공항까지의 국내운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급방법은 국외여비 실비정산(e-사람시스템)시 해당 국내운임에 대해 추가 정산을 하면 됨. \* 지출예산항목 : 국내여비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나

Q A 3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국외에서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ℓ당 유류비 ÷ 연비(여비업무 처리기준 “IV. 2. 라”의 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2-라-2)

Q A 4

국외 출장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여비가 아닌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함.
-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원한 렌트 비용이 있으면 일비는 국내여비와 동일하게 2분의 1만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5-가-4)



Q A 5

여행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금액의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적용 여부는?

-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취지에 따라 여행사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출장자는 자신의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사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음.
- 따라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및 소명 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5-가-4)

Q A 6

국외 출장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승급 대상 및 요건은?

- [퍼스트클래스(1등정액) 이용대상자]
  - 비즈니스 또는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퍼스트클래스로 좌석승급
- [비즈니스클래스(중간정액) 이용대상자]
  -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비즈니스클래스로 좌석승급.
-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 이용대상자]
  - 통상대표단 일원으로 출장가는 경우 또는 항공여행시간이 편도 8시간이상인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5)

Q A 7

총 4박5일 출장 일정(3.1~3.5)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경비 추가지급 방법은?

- 3.1~3.3, 서울 → 도쿄, 공무 항공마일리지 사용
- 3.3~3.5, 도쿄 → 베이징 → 서울, 공무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 공무 항공마일리지(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하여 이용한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에는 경비의 50%를 추가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경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따라서 편도만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출장기간 전체에 대하여 경비를 추가지급할 수 있음.(추가지급되는 경비 총액의 상한액만 다를 뿐임)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5), V-5-가

## 나. 식비

Q A 1

국외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국외출장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함.
-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4-나-1)

Q A 2

국외여비는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장전 개인별 통장입금이 불필요함.
- 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5-가-2)

Q A 3

상급자와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상향조정 요건] 상급자와 동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경우로서, 하급자의 여비등급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
  - \* 상급자와 같은 객실의 등급이나 식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상향조정 범위] 숙박비 또는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
  - \* 단, 상향조정된 등급에서 50% 추가정산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II-1-나-3)

## 다. 숙박비

Q A 1

국외출장 후 여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既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 숙박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며, 정산할 때에는 숙박비에 포함된 아침식사비 등은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3)

Q A 2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은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은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의 출장자 전원의 숙박비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함.
-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5)

Q A 3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원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 출장신청 당시의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USD 상한액을 여행대상 국가인 영국 파운드화로 환산하고 출장자는 현지화폐로 환산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숙박비 카드 결제. 실비 정산은 숙박비 영수증에 표기된 현지통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 이때 국제환율 적용기준은 출장신청 시점에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발표한 해당국가 환율을 적용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2)



4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 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제는 국외여비 항목간에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이므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라-2)



5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에서는 실비 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정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라-2)-마)



6

국외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은?

-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신청을 해야 함.
- 국제카드사 등으로부터 카드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 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산신청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4)



7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 국외숙박비 지급방법은?

-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취지에 따라 해당 숙박비는 현지 호텔에서 결제하여야 함.
-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식비, 일비는 개인별로 정액 지급하므로 출장자에게 입금한 후 각 출장자가 여행사에 재입금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가-1)

Q A 8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매도율(현찰사실때)과 현찰매입률(현찰파실때)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매도율, 현찰사실때)을 기준으로 함.
- 또한, 환율적용 시점은 국외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와 준비금 정산시에는 국외출장 출장시 출장비를 지급받았을 때 적용하였던 환율을 기준으로 정산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5-나-2)-나)-(4), II-5-다-3)-가)-(1)-(가)

## 라. 국외출장 준비금

Q A 1

1개월전 '말레이시아'로의 국외출장시에 준비금을 지급 받았는데, '인도네시아'로의 국외출장시 다시 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출장시마다 계급·여행일수에 관계없이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4가지 항목에 대해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6-가

Q A 2

여행자보험료도 국외출장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준비금 지급대상 항목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 4가지 항목임.
- 준비금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e-사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6-나



3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서울소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이 실비로 지급됨.
-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도 포함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6-나

## 4.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 가. 부임여비

#### 《 개 요 》

-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근무지의 지역 거주자에 한함)
- 지급항목 : 운임비, 일비, 숙박비, 준비금(외국으로 부임시)
  - 다만,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 또는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음
- 지급기관 : 부임의 경우, 新근무기관(협의시 舊근무기관 가능)에서 지급, 청사이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지급



1

대전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대구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대구)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방법은?

- [출장여비] '대전→서울'로의 금요일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비(대전-서울), 일비, 식비에 대해서는 대전소재 A기관이 지급함.
- [부임여비] '서울→대구'로의 월요일 부임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비, 일비, 식비는 대구소재 B기관(사전 협의시 A기관 지급 가능)이 지급함. 다만, 부임여비는 전임지와 신근무지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운임비는 '서울-대구'가 아니라 '대전-대구'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1



2

서울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A(서울 거주)와 B(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신규채용자에 대한 부임여비는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A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B에 대해서는 운임비, 일비, 식비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1-마



3

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 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 기관은?

- A→B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운임비, 식비 등을 신청(1주일내 정산신청)한 경우에는 B기관이 부임여비를 지급함.
- B→C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동일 근무지역내에서의 인사발령이므로 C기관은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1주일 이내에 B→C로 연속적으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사실상 부임여비 신청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A→C기관의 부임으로 보아, C기관에서 부임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나, VI-1-라

## 나. 국내 이전비

### 《 개 요 》

-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근무지의 지역 거주자에 한함)
- 이주 및 신청기한 : 사유발생 후 1년내(신입지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6개월내) 이사, 이사 후 6개월내 신청
  - 단, 부임의 명, 청사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 이사의무 유예 가능
  -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국내 이전비 지급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 \* 세종시 이전대상 공무원의 경우, '16.12.31까지 이사의무 유예

- 지급기관 : 신근무기관에서 지급, 협의시 구근무기관에서 지급가능
-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5톤 이하	실비 전액,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5톤까지는 전액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하고, 7.5톤을 상한으로 초과분(최대 2.5톤)까지는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 지급

- 제출서류 : 이사화물 운송명세,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관사거주 확인서 등)





1

서울시 소재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종전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인 원주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국내이전비 지급은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사례와 같이, 동일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전비 지급을 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나-1)-가)



2

전주의 A기관에서 춘천의 B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가정형편 (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상 실제 이사는 서울로 하고, 인사발령 후에는 춘천 소재 관사, 하숙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로의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근무지의 지역으로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신입지로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신입지 이외의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신입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입지까지의 통근 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입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음.
- 사례의 경우, 통근시간 단축 여부를 떠나 실제 거주지(춘천)와 이전지(서울)가 불일치하여 통근을 요건으로 하는 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실제 서울-춘천간 통근(전철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전주-춘천의 통근시간보다, 서울-춘천의 통근시간이 더 짧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나-1)-라)



3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종전의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1시간20분)에 비해, 현재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1시간30분)이 유사하거나 더 먼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어 이전비 지급이 불가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나-1)-라)



4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0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1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함.
- 따라서 사례의 경우, 11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다



5

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150만원 \div 7.5톤) \times 5톤 \times 100\%$
-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150만원 \div 7.5톤) \times 2.5톤 \times 50\%$
- 총 지급액 : 125만원 = 100만원 + 25만원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다



6

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200만원 \div 10톤) \times 5톤 \times 100\%$
-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200만원 \div 10톤) \times 2.5톤 \times 50\%$
- 총 지급액 : 125만원 = 100만원 + 25만원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다

Q A

7

부산 소재 A기관에서 대구 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13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동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동년 11월 30일에 복직한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이전비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함.
- 다만, 여비지침 개정으로 2013년 1월 9일 이후 이전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례의 경우,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이전비 지급신청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라-1)

Q A

8

섬 지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운 근무지로 부임 또는 이전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한 경우, 도선료 지급이 가능한지?

-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으로의 부임 또는 이전에 따른 개인차량 도선료(선적비)는 부임여비 또는 이전비로 지급이 가능함.
- 아울러 개인차량에 대한 도선료 지급은 1회에 한하므로, 개인차량 도선료가 부임 및 이사화물 이전시 각각 발생한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나-2)

## 다. 국외 이전비

### 《 개 요 》

- 지급대상 : 본국 ↔ 외국 또는 외국 ↔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 신청기한 : 이사 후 6개월내 신청
  - \* 외국의 주거여건 및 임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의무 기한이 없음
- 지급기관 : 新근무기관에서 지급, 협의시 舊근무기관에서 지급가능
- 지급기준(해상운송 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15m <sup>3</sup> 이하	실비의 100%
15m <sup>3</sup> 초과(25m <sup>3</sup> 를 상한으로 함)	실비의 80%

- \* 단, 예외적으로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해상운송시 15m<sup>3</sup>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거주지 변경 확인 및 이사화물 운송명세 관련 증거서류

Q A 1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실제 이사일은 6월 1일인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국내이전비의 경우,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이사, 이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나, 국외이전비의 경우 이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만 규정됨.
- 국외이전시 별도의 이사의무기한을 두지 않은 것은 외국의 주거여건 및 임차여건 등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로 이전한 날인 6월 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인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3-다

Q A 2

외국으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지?

- 내륙국가 또는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음. 다만, 300kg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으로 15m<sup>3</sup>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각 기관은 복수의 해외이사업체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통하여 상한액(선박을 이용한 15m<sup>3</sup> 국외이전비 비용 등)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3-나-2)

Q A 3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로스엔젤레스로 부임명령을 받아 15m<sup>3</sup> 이사화물을 \$5,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 국외이전비 지급대상은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임.
- 국외이전비 지급기준으로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 전액을 지급하므로 공무원 「갑」에게 이전비 \$5,000를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3-나-2)



4

공무원 「을」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25m<sup>3</sup>의 이사화물을 \$7,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전비는?

- 공무원여비규정상 15m<sup>3</sup>를 넘는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사화물이 25m<sup>3</sup>를 넘는 경우에는 25m<sup>3</sup>를 상한으로 함.
- 공무원 「을」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7,000 \times 80\% = \$5,600$ 임.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3-나-2)

## 라. 국내 가족여비

### 《 개 요 》

- 지급사유 : 국내 이전자로서 가족을 동반하여 이전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
- 지급기준
  - 운임비, 숙박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실비 전액
  - 일비, 식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정액지급분의 2/3 (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을 지급



1

서울(전임지)에서 대전(신임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인근 공주시(거주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신청기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가족을 불러와야 하며, 불러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여비를 신청해야함. 신임지로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후 1년 이내에 가족을 불러와야 하며, 불러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여비를 신청해야함.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해당 공무원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 [지급액] 가족 1명마다 운임과 숙박비(실비정산)는 해당 공무원과 동일금액으로, 일비·식비는 동일금액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자)을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4

## 마. 국외 가족여비

### 《 개 요 》

- 지급사유 : 영 별표6의2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신임지로 가족동반출국, 외국근무중 가족초청, 교육을 위한 일시귀국, 외국근무중 배우자동반 공무여행, 가족사망으로 인한 일시 가족1인 대리귀국
- 지급기준
  - 운임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실비 전액
  - 일비, 숙박비, 식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정액지급분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을 지급



1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귀국하면서, 런던에서 유학중인 20세의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올 경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영 별표6의2 제1호에 따라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로 동반할 경우에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사례의 경우,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을 귀국시키는 것이므로 영 별표6의2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가족여비 지급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5-나-1)



2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세의 자녀를 근무지로 불러올 경우,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영 별표6의2 제2호에 따라 외국 근무중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에는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비록,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주재국(미국)으로 불러오는 경우라도 국외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해당 주재국의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주재지로 불러오는 경우에는 국외가족여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5-나-2)



3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의 재외공무원이 가족동반으로 전지 휴양 등을 갈 수 있는 횟수 및 여비지급액은?

- [전지 휴양] 연1회
- [전지 의료검진] 연1회
- [저지대 요양] 분기1회
- [가족에 대한 여비지급액] 해당 공무원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운임비 전액, 다만,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동반하는 자녀에 대한 항공운임은 본인의 등급과 관계없이 2등정액(이코노미)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VI-5-나-7), 8)

## 5. 기타

Q A 1

공무원 「갑」이 허위출장으로 8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방법은?

- [환수금액] 총 24만원(부당수령액 8만원 + 가산징수금액 16만원)
    - \* 가산징수금액은 부당수령액의 2배 상당액임
  - [환수방법]
    - 부당수령액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 가산징수금액 : 환수시기와 상관없이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 [적용시기] 2013년 6월 12일 이후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람부터 적용
-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Ⅷ-4-나

Q A 2

외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국내에서의 여비 지급방법은?

- 국내 체류 기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로 지급함.
  - 다만, 입국일과 출국일은 출장여정(국내체류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I, IV / 공무원 여비규정 §28조①항

Q A 3

과장급공무원(제2호가목)이 국장급(제1호라목) 직위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무대리중인 과장급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어느 직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직급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함. 사례의 경우, 과장급 공무원(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함.
-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3.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4

2박3일 근무지의 출장시, 친지숙박을 하여 숙박비 영수증이 없고, 출장 첫날과 마지막날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없는 경우, 친지 숙박비, 식비 및 일비 지급방법은?

- [3일간 개최되는 세미나 참석 등 원출장일정이 3일인 2박3일의 출장인 경우]
  - 세미나에 3일간 참석하였다는 참석확인증 등 출장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친지숙박비와 식비 및 일비의 정액을 지급할 수 있음.
- [원일정은 1일이지만 원거리여서 3일간의 출장명령이 난 2박3일의 출장인 경우]
  - 첫날과 마지막날의 승차권이나 통행영수증 등 출장기간 동안 출장지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친지숙박비와 식비 및 일비의 정액 또는 조정금액(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첫날과 마지막날은 출발시간과 복귀시간 등 출장시간을 고려하여 식비는 지출이 불필요한 식수만큼, 일비는 1일 출장시간에서 제외되는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음)을 지급할 수 있음.
  - 첫날과 마지막날의 승차권이나 통행영수증 등 출장기간 3일 동안 출장지에 체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일부 또는 전부 없는 경우에는, 세미나 당일 새벽에 출장지로 출발하고, 당일 밤늦게 근무지로 복귀하였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친지숙박 사실을 해당 친지에게 확인하는 등 반드시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친지숙박 사실이 확인되는 날에 대해서만 아래 기준에 따라 친지숙박비와 식비 및 일비의 정액 또는 조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기준1) 출장 첫날 및 둘째날 모두 친지숙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일간 여비 모두 지급
    - 기준2) 출장 첫날만 친지숙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일차 및 2일차 여비 지급
    - 기준3) 출장 둘째날만 친지숙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일차 및 3일차 여비 지급
    - 기준4) 출장 첫날 및 둘째날 모두 친지숙박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일차 여비만 지급
- [운임 지급방법]
  - 운임은 실비 지급이 원칙이므로 승차권 등 증빙자료가 없으면 지급할 수 없으며, 만일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행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할 수 없는 사유를 출장자가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에 따라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II-4, IV-1-나

# 제4장 공무원 성과업무 Q & A

## 목 차

I. 질의응답 사례	141
1. 성과계약등 평가	141
1. 파견자는 누구와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142
2.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이 바뀌는 경우 그때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142
3. 성과계약등 평가시 상사가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상사평가의견 작성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143
4.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범위는?	143
5.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인원비율 적용방법은?	143
2. 근무성적평가	144
1. 정기 근무성적평가 기준일 (12.31) 이전인 11월 25일에 평가대상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144
2. 승진최저소요연수에 미달한 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자가 아니므로 근무성적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145
3. 휴직등의 사유로 정기평가 기준일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근무성적평가 방법은?	145

4. 5급공무원이 '07. 8. 1부터 '08. 6. 10까지 휴직한 경우의 정기 근무성적 평가 실시 여부는? ..... 145
5. 5급공무원이 '05. 9. 1부터 '07. 8. 31까지 해외유학 파견된 경우의 정기 근무성적 평가방식은? ..... 146
6. A부처 소속 5급공무원이 '08. 6. 1 B부처로 전보되어 B부처에서 '08. 6월말 정기평가를 할 경우 방법은? ..... 146
7. 평가단위 연도 중 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09. 1. 31. 기준으로 작성하는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 (5급의 경우) ... 147
8. 평가대상기간의 중간에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의 근무 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 (5급의 경우) ..... 147
9. 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전·후에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이 없을 때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5급의 경우) ..... 148
10. 1개의 평가단위연도와 1개의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 ..... 148
11. 1개의 평가단위연도와 1개의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 ..... 149
12. 2개의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5급의 경우) ..... 149
13. 정기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 150
14. A국에서 서로 다른 평가자 a, b, c가 소속 공무원인 갑, 을, 병의 평가 점수를 각 99, 88, 85로 부여했을 때 국단위 서열은 갑, 을, 병으로 해야하는지? ..... 150
15. 확인자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조정이 있을 때 반드시 평가자는 소속 직원들의 서열을 조정해야 하는지? ..... 150

16. 평가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그 서열을 변경할 수 있는지?  
..... 151
17. 8급 공무원이 '11.12.20부터 '12.5.25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복귀와 동시에 '12.6.5일 까지 휴가를 낸 경우 이 사람은 평가대상이 되는지? ..... 151
18. 강등전 해당직급에서 2년 정도 근무경력이 있는자가 강등되어 승진된 경우도 강임된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성적 평정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 151
19. '12.12.12. 직권면직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 결정으로 '13.6.3.에 직권면직이 취소된 자의 경우 '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인지? ..... 151
20.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 확인자 단위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단위에서의 서열도 공개가 가능한지? ..... 152
21. 정기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 152
22. 근무성적평가의 경우 성과계획서의 작성을 생략한 공무원의 경우 성과면담서 작성을 생략해도 되는지? ..... 152
23. 근무성적평가 시 직급별 평가등급 분포비율(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의 배분은 정원이나 현원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153
24. 근무성적평가지 근무성적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데, 병가기간이 실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 153

25.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의해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 153

**3. 경력평정** ..... 154

1.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과거에 감봉3월 처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이 경력평정 시 반영되는지? ..... 154
2. 2007. 9. 12자로 ○○기관 계약직공무원 (7호)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 11자로 퇴직함과 동시에 특별채용시험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6. 30자로 경력평정을 실시할 경우 경력평정 방법은? ..... 155
3. 행정7급 공무원이었던 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의원면직하였다가 일정 기간 경과하여 별정7급상당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직제변경 등으로 인해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으로 다시 특별채용된 경우 임용전 경력인 행정7급 및 별정7급 상당 경력을 갑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155
4. 현재 행정9급으로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전에 전산9급 경력이 있는데, 전산9급으로 신규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경력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156
5.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함에 있어 임용전 군복무대체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자격증 소지경력 (근무기간의 10할 내지 8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충역 군복무경력 (2년 범위내 6할)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 156
6. 공무원 임용전에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병역의무기간의 경력평정 인정 기간은? ..... 157
7. 공무원 임용전에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 병역의무기간의 경력평정 인정 기간은? ..... 157

- 8. 공무원 임용전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경우 병역의무기간의 경력평정 인정기간은? ..... 157
- 9. 경력평정 중 자격증 소지경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종류는? ..... 158
- 10. 경력평정 중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의 범위는? ..... 158
- 11. 경력평정 중 기타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의 평정방법은? ..... 158
- 12.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임용예정직급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자가 국가공무원의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동기간을 경력평정할 수 있는지? ..... 159
- 13. 직렬을 달리하여 부처간 인사교류된 자(행정직렬 5급이 교육행정직렬로 부처간 교류된 자)의 경력평정에 있어 임용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된 이후부터 교류되기 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은 갑경력 또는 을경력중 어느 경력에 해당되는지와 그 경력의 적용시점은? ..... 159

**4. 가점평정** ..... 160

- 1. 자격증 가점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의 해당자격증 인정시 6·7급, 8·9급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격증 가점을 인정해야 하는지? ..... 160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161

- 1. 신규채용된 행정9급 공무원이 과거 행정9급의 경력이 4년이 있어 승진 후보자명부에 등재될 때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인정범위는? ..... 162

**6. 다면평가** ..... 163

- 1.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 또는 경찰조직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조직 분위기 와해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 하지 않아야 하는지? ..... 165

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거 소속장관이 다면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속장관이 5급이상 공무원의 다면평가 실시 방침을 정하고 하위기관장이 하위직 공무원까지 다면평가를 확대실시할 수 있는지? ..... 165

**7. 성과관리카드제** ..... 166

1. 성과관리카드는 1년 단위로 작성·관리되는데 비해 5급이하 근무성적 평가는 연 2회 실시되므로 연말에 상·하반기 평가를 재정리해야 하는지? ..... 168
2.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해야할 성과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각 부처 담당자 및 일반공무원들의 업무부담 해소방안은? ..... 168
3. ‘e-사람’ 상의 근무성적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경우, 평가결과들이 전산상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성과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 168
4. 부처간 전보 등으로 과제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 결과는 전임자와 후임자 중 누구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는지? ..... 169
5. 정책평가 및 감사 결과를 인사담당부서로 하여금 개인별 성과관리 카드에 입력·관리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69
6. 정책평가총괄부서와 감사총괄부서에서 성과관리카드의 해당 정보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그 부서도 인사부서와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카드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169

## 1. 성과계약등 평가

## 《 개 요 》

##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승진방법) 및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지침(예규)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체계 >

고위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
성과계약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 □ 성과계약등 평가제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개인업무 실적평가, 부서단위 실적평가 등에 대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익년도 초에 목표달성도 등 평가
  -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지급(과장급 이상) 등에 활용
  - 평가시기 : 12월31일 기준으로 실시
- ※ 3개 등급 이상으로 자율방식(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에 의해 평가 단,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5개 등급으로 하되, 상대평가요소 도입(최상위 등급 20%이하, 하위2개 등급은 10%이상으로 인원비율 설정, 성과평가지침 '09.2)
- 운영절차



## □ 성과계약등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연봉 지급 (과장급이상)
  - 성과계약등 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대상자를 서열화하여 성과연봉 지급
- 적격성 심사 (고위공무원단)
  - 총 2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경우 적격 심사대상이 됨



**Q A 1 파견자는 누구와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파견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직위에 맞는 업무를 하게 되며 평가는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파견받은 기관에서의 본인의 직상급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성과계약 내용 또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에 관한 것임
- 성과계약등 평가 역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한 상급자가 실시하며, 파견받은 기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파견자의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원소속기관에서는 평가결과를 인사평가,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 인사운영에 활용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Q A 2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이 바뀌는 경우 그때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지 여부?**

- 보직이 바뀌면 본인의 추진해야 할 업무와 그에 대한 목표와 지표가 달라 지므로 성과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상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 때, 전보자의 경우 성과계약서를 완전히 새로이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직위의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할 수 있음
- 성과목표나 지표 등 성과계약 내용은 해당 직위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므로, 행정환경의 변화나 조직개편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직위와 관련된 목표와 지표의 핵심내용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다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의 면담과 합의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성과 목표 및 지표 등을 수정할 수 있음
- 또한 성과계약서 승계 절차는 재작성 절차 없이 전임자의 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부처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3

성과계약등 평가시 상사가 평가의견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상사평가의견 작성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상사평가의견은 평가대상자의 실적과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서, 개인의 성과관리카드에 누적 관리되어 각종 인사에 필수 자료로 활용됨. 또한 상사가 평가의견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는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관리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상사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주지시켜야 함
- 또한, 관리자의 업무부담 경감, 핵심적인 사항 기록, 인사활용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상사평가의견 작성방법을 정하였으므로 각 부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참고로, 상사평가의견 중 '실적' 부분의 특별한 성과와 미흡한 성과는 기록할 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하나, '능력' 부분의 탁월한 능력과 보완필요 능력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함. 총평은 '실적'과 '능력' 부분 모두에 필수적으로 기록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4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이 되는 연구관과 지도관의 범위는?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연구관·지도관'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대상이 됨
- 단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은 근무성적평가 대상임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5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인원비율 적용방법은?

- 부처별로 고위공무원 평가 시 전체 통합평가 또는 직무등급별 (가·나등급)로 분리평가가 가능함
    - 단, 가·나등급 분리평가 시에도 등급별 인원비율 및 관대화지수 측정은 부처별 고위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적용함
  - 등급별 인원비율 적용은 부처별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함
    - 단, 평가대상 고위공무원이 2인인 경우 우수, 보통, 미흡이하 등급 중에서 평가등급부여가 가능함
-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II - ③ - 5. - 5.4. - (4) - 2)

## 2. 근무성적평가

### 《 개 요 》

####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승진방법) 및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지침(예규)  
\* 대상 : 5급이하 일반직(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 □ 근무성적평가

- 평가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시 정기평가 기준일을 달리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부서평가결과 추가가능)
- 평가등급 : 3개 등급 이상

##### <성과평가 프로세스>

- 상하 합의에 의한 성과목표 설정 → 주기적 성과면담 → 평가 → 결과공개 → 이의신청 → 최종 확정



1

정기 근무성적평가 기준일 (12.31) 이전인 11월 25일에 평가대상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보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상당기간을 전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현 부서의 장이 전 부서의 장의 평가의견을 들어 근무성적평가를 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7조 제5항

**Q A 2** 승진최저소요연수에 미달한 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대상자가 아니므로 근무성적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성과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조직 구성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승진심사 뿐만 아니라 성과급 지급, 교육훈련, 포상,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신규채용자 및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자 등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Q A 3** 휴직등의 사유로 정기평가 기준일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근무성적 평가 방법은?

- 휴직 등으로 정기평가 기준일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평가 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Q A 4** 5급공무원이 '07. 8. 1부터 '08. 6. 10까지 휴직한 경우의 정기 근무 성적평가 실시 여부는?

- '07년 12월말에는 평가일 현재 당해인이 근무중에 있지 아니하지만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이상이므로 정기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 '08년 6월말에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 '08년 12월말에는 정기평가를 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Q A 5

5급공무원이 '05. 9. 1부터 '07. 8. 31까지 해외유학 파견된 경우의 정기 근무성적 평가방식은?

- '07. 12월말 정기평가가 있기 이전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 평가점
    - '04. 12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05. 6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05.12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06. 6월말 : 예외평가('05.6월말 + '05.12월말의 평균점)
    - '06.12월말 : 예외평가( " )
    - '07. 6월말 : 예외평가( " )
  - '08. 1월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 평가점
    - '05. 6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05.12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06. 6월말 : 예외평가('05.12월말 + '07.12월말의 평균점)
    - '06.12월말 : 예외평가( " )
    - '07. 6월말 : 예외평가('07.12월말 평가점)
    - '07.12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 파견종료('07.8.31)후 최초의 정기평가('07.12월말)를 실시하였으므로 파견기간중 평가점은 없는 것으로 봄
  - '08. 7월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 평가점
    - '05.12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06. 6월말 : 예외평가('05.12월말 평가점)
    - '06.12월말 : 예외평가('05.12월말 + '07.12월말의 평균점)
    - '07. 6월말 : 예외평가( " )
    - '07.12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08. 6월말 : 정기평가 평가점
-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Q A 6

A부처 소속 5급공무원이 '08. 6. 1 B부처로 전보되어 B부처에서 '08. 6월말 정기평가를 할 경우 방법은?

- A부처에서는 '08. 1. 1부터 '08. 5. 31까지의 근무성적을 평가(절대평가)하여 그 결과를 B부처로 송부하고
  - B부처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소속 5급공무원과 같이 정기평가 실시(상대평가)
-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5항



7

평가단위 연도 중 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09. 1. 31. 기준으로 작성하는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 (5급의 경우)

'06. 6월말 평정점 ..... 50점	}	$(50 + 0) \div 1 \times 33\% = 16.5$
'06.12월말 평정점 ..... 없음		
'07. 6월말 평정점 ..... 56점	}	$(56 + 58) \div 2 \times 33\% = 18.81$
'07.12월말 평정점 ..... 58점		
'08. 6월말 평가점 ..... 63점	}	$(63 + 65) \div 2 \times 34\% = 21.76$
'08.12월말 평가점 ..... 65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 : 57.07점

평가단위연도(1년)  
평가단위기간(6월)

※ '평가단위연도'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점 기준 최근순으로 2개씩의 평가단위기간을 의미함

예시) '09.7.31.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는 「'09. 6월말과 '08.12월말」, 「'08. 6월말과 '07.12월말」, 「'07. 6월말과 '06.12월말」이 각각 평가단위연도임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



8

평가대상기간의 중간에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 (5급의 경우)

'06. 6월말 평정점 ..... 42점	}	$(42 + 46) \div 2 \times 33\% = 14.52$
'06.12월말 평정점 ..... 46점		
'07. 6월말 평정점 ..... 없음	}	$(46 + 60) \div 2 \times 33\% = 17.49$
'07.12월말 평정점 ..... 없음		
'08. 6월말 평가점 ..... 60점	}	$(60 + 62) \div 2 \times 34\% = 20.74$
'08.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 : 52.75점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5항

**Q 9** 평가점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전·후에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이 없을 때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5급의 경우)

'06. 6월말 평정점	.....	47점	}	$(47 + 53) \div 2 \times 33\% = 16.5$
'06.12월말 평정점	.....	53점		
'07. 6월말 평정점	.....	57점	}	$(57 + 59) \div 2 \times 33\% = 19.14$
'07.12월말 평정점	.....	59점		
'08. 6월말 평가점	.....	없음	}	$(59 + 42) \div 2 \times 34\% = 17.17$
'08.12월말 평가점	.....	없음		
		(4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 : 52.81점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5항

**Q 10** 1개의 평가단위연도와 1개의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

'06. 6월말 평정점	.....	없음	}	$(42 + 44) \div 2 \times 33\% = 14.19$
'06.12월말 평정점	.....	없음		
'07. 6월말 평정점	.....	없음	}	$(44 + 0) \div 1 \times 33\% = 14.52$
'07.12월말 평정점	.....	44점		
'08. 6월말 평가점	.....	61점	}	$(61 + 62) \div 2 \times 34\% = 20.91$
'08.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 : 49.62점

※다만, '06.6월말 이전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에 한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제5항

Q A 11

1개의 평가단위연도와 1개의 평가단위기간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

'06. 6월말 평정점	.....	42점	}	$(42 + 44) \div 2 \times 33\% = 14.19$
'06.12월말 평정점	.....	44점		
'07. 6월말 평정점	.....	없음	}	$(44 + 62) \div 2 \times 33\% = 17.49$
'07.12월말 평정점	.....	없음		
'08. 6월말 평가점	.....	없음	}	$(62 + 0) \div 1 \times 34\% = 21.08$
'08.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 : 52.76점
----------------------------------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제5항

Q A 12

2개의 평가단위연도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 방법은?(5급의 경우)

		(42점)	}	$(42 + 60) \div 2 \times 33\% = 16.83$
'06. 6월말 평정점	.....	없음		
'06.12월말 평정점	.....	없음	}	$(42 + 60) \div 2 \times 33\% = 16.83$
'07. 6월말 평정점	.....	없음		
'07.12월말 평정점	.....	없음	}	$(60 + 62) \div 2 \times 34\% = 20.74$
'08. 6월말 평가점	.....	60점		
'08.12월말 평가점	.....	62점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될 근무성적평가점 : 54.4점
------------------------------

※ 다만, 06. 6월말 이전 동일직급에서의 평가점이 없는 경우에 한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5항



Q A 13

정기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평가단위별로 소속장관이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전보인사 등으로 평가자 및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교체될 경우에도 평가대상공무원들의 평가는 해당공무원의 정기평가기준일 현재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되
- 새로 지정된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직전의 상급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Q A 14

A국에서 서로 다른 평가자 a, b, c가 소속 공무원인 갑, 을, 병의 평가점수를 각 99, 88, 85로 부여했을 때 국단위 서열은 갑, 을, 병으로 해야하는지?

- 기본적인 확인자의 역할은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것임
- 각각의 평가자의 평가방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기 사례에서는 소속 평가자들의 평가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동일 평가자 단위 소속이 아닌 평가대상자들의 국단위 서열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을, 병, 갑이나 병, 을, 갑 순으로 서열이 조정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Q A 15

확인자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조정이 있을 때 반드시 평가자는 소속 직원들의 서열을 조정해야 하는지?

- 근무성적평가 시 공개 요청이나 이의 신청은 서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서 상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임
- 따라서 평가결과를 조정하는 것이지 반드시 동일 평가자 소속의 평가대상자들의 서열을 조정하는 것은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Q A 16** 평가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그 서열을 변경할 수 있는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

**Q A 17** 8급 공무원이 '11.12.20부터 '12.5.25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난 후 복귀와 동시에 '12.6.5일 까지 휴가를 낸 경우 이 사람은 평가대상이 되는지 ?

- 이 경우에는 실근무기간이 1월 미만으로 '12.6월말 정기평가에서 제외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Q A 18** 강등전 해당직급에서 2년 정도 근무경력이 있는자가 강등되어 승진된 경우도 강임된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성적 평정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지 않고 하위직급에 임용한 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승진임용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이고
- "강등"은 징계의 한 종류이어서 강임과 강등은 별개의 것임
- 따라서 강등된 자에 강임의 방식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

**Q A 19** '12.12.12. 직권면직 후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소 결정으로 '13.6.3.에 직권면직이 취소된 자의 경우 '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인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임
-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가 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 일지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Q A 20**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 확인자 단위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단위에서의 서열도 공개가 가능한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지침에 의하면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한정됨. 즉, 공개 가능한 평가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임
- 서열의 공개는 순위 이상의 정보를 주지 못하고 개인 자체의 성과보다는 타 평가대상자와의 상대적 비교에 의해 정해지므로 개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피드백과는 유리되며, 개인의 장·단점 보완이라는 평가결과 공개의 본질적 취지에도 벗어나기 때문임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Q A 21** 정기 근무성적평가가 이루어지기 얼마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타부서로 전보된 경우 평가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상위 감독자중에서 평가단위별로 소속장관이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전보인사 등으로 평가자 및 확인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교체될 경우에도 평가대상공무원들의 평가는 해당공무원의 정기평가일 현재의 상급·상위 감독자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되
- 새로 지정된 평가자 및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직전의 상급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Q A 22** 근무성적평가의 경우 성과계획서의 작성을 생략한 공무원의 경우 성과면담서 작성을 생략해도 되는지?

- 성과면담은 성과계획서 작성과 별개로 평가를 받는 모든 평가대상공무원들이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과 능력에 대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의 피드백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차후 평가결과 공개나 이의신청과도 연관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Q A 23

근무성적평가 시 직급별 평가등급 분포비율(수 2할, 우 4할, 양 3할, 가 1할)의 배분은 정원이나 현원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근무성적평가지 등급 배분비율의 기준은 정원도 아니고 현원도 아니며, 당해 평가대상기간 중 근무성적평가대상이 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현원에는 포함되어도 실제근무기간 1개월미만자 등 근무성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등급배분 기준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4항·제5항

Q A 24

근무성적평가지 근무성적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데 병가기간이 실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의 실제 근무기간에 휴가, 병가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휴가,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Q A 25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의해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하므로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반영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7항

### 3. 경력평정

#### 《 개 요 》

- 평정대상자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 평정시기 :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정기평정일 변경시 평정일 기준 실시)
- 경력평정가능기간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설정
- 경력평정점 산출 (공무원 및 기타경력)
  - ⇒ 경력평정가능기간은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설정
  - 5급 : 4년 이상
  - 6급, 연구·지도사 : 3년 6월 이상
  - 기능6급 이상 : 3년 이상
  - 7·8급, 기능7·8급 : 2년 이상
  - 9급, 기능9급 : 1년 6월 이상
- 경력환산율
  - 갑(10할), 을(8할), 병(6할), 정(3할)
  - 박사학위, 자격증 소지(8~10할)
  -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6할)
- 최종 경력평정점 결정
  - 최종경력평정점수 = 환산경력월수 × 월경력평정점수

Q 1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과거에 감봉3월 처분이 있는 경우 이 기간이 경력평정 시 반영되는지?

- 경력평정은 실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평정을 하는 것이므로 감봉처분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경력평정 시 반영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Q A 2

2007. 9. 12자로 ○○기관 계약직공무원 (7호)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 11자로 퇴직함과 동시에 특별채용시험에 의거 일반직공무원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6. 30자로 경력평정을 실시할 경우 경력평정 방법은?

- 위 경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력환산율표) 다목 병경력 (9)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 계약직공무원 경력기간 (40월)에 대해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 [40월의 5할 중 7급 승진소요최저연수 (3년)의 1/2 (18월) 범위내에 해당하는 기간] (18월)에 병경력 환산율 (6할)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간 (10월 24일)을 최종 환산경력기간으로 인정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Q A 3

행정7급 공무원이었던 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의원면직하였다가 일정기간 경과하여 별정7급상당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직제변경 등으로 인해 동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으로 다시 특별채용된 경우 임용전 경력인 행정7급 및 별정7급 상당 경력을 갑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임용전 행정7급의 경력은 현직급과 동일직렬의 동일계급이상의 경력이므로 갑경력에 해당되나, 상기자는 행정7급에서 퇴직했던 사유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별정7급상당 경력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 가목 (2)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표 1] 제1호 나목(6)에 따라 을경력으로 평정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Q A

4

현재 행정9급으로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전에 전산9급 경력이 있는데, 전산9급으로 신규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경력 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 가목 (5)에 의하면, 시보 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갑경력에 해당되는 바, 동 기간은 당해 교육훈련을 받은 후 임용예정직급에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평정이 가능하며,
- 위 내용과 같이 현직급으로 임용되기 전 과거 공무원경력의 임용전 교육훈련 기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Q A

5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력 평정을 함에 있어 임용전 군복무대체 보충역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자격증 소지경력 (근무기간의 10할 내지 8할)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충역 군복무경력 (2년 범위내 6할)으로만 인정하여야 하는지?

-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의 대체형태로서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급인력을 육성·지원하는 제도인 바, 근무조건도 일반인과 동일하며 다른 민간분야경력과 경력성질상 차이가 거의 없음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상기 자격증 소지경력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행규정상 자격증 소지경력 중 산업기능요원 근무경력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자격증 소지경력 관련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따라서 당해직급 직무와의 관련성 및 업무 활용도를 중시하는 경력평정제도의 기본취지를 고려해 볼 때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자격증 소지경력의 인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증 소지경력 과 군복무 경력 중 유리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Q A 6

공무원 임용전에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병역의무기간의 경력평정 인정기간은?

- 현역 복무기간 전부(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기간을 포함함)
  - 다만, 사관생도·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부사관후보생기간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교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복무하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인 4년의 범위내에서 평정하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 다목(2) 및 [별표 2] 제1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경력을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한 기간이 이 항에 의한 평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항에 의한 평정을 하지 아니함
-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별표 2]

Q A 7

공무원 임용전에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 병역의무기간의 경력평정 인정기간은?

- 「병역법」 제74조 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복무기간
- [병역법시행령 제151조 개정('11.11.23)으로 '11.2.27이후 소집된 사람은 보충역 복무기간이 2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1개월로 하고, 2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복무기간]
-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의2]

Q A 8

공무원 임용전에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경우 병역의무기간의 경력평정 인정기간은?

- 당해 복무기간임
-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의2]



**Q A 9 경력평정 중 자격증 소지경력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종류는?**

- 경력평정대상 자격증은 소속장관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
-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에 규정된 자격증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이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격증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의2]

**Q A 10 경력평정 중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의 범위는?**

- 경력평정에 반영되는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의 범위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동 지침(상당계급 인정기준),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경력경쟁채용 시 정하는 경력기준에 의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의2]

**Q A 11 경력평정 중 기타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의 평정방법은?**

- 기타 경력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별표 2]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임용예정 직급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자가 국가공무원의 동일 직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동기간을 경력평정할 수 있는지?

Q A 12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규정된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실무수습 포함)에 대한 경력평정은 동 교육훈련 이수 후 임용예정 직급인 지방공무원(시보 또는 정규)으로 임용된 후 국가공무원의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다면 동기간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직렬을 달리하여 부처간 인사교류된 자(행정직렬 5급이 교육행정직렬로 부처간 교류된 자)의 경력평정에 있어 임용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신설된 이후부터 교류되기 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은 갑경력 또는 을경력중 어느 경력에 해당되는지와 그 경력의 적용 시점은?

Q A 13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가목 (4)의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기 전의 원직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분리·신설된 직렬에 임용되어 근무하기 전까지의 경력을 의미함
- 따라서, 「공무원임용령」이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로부터 분리한 사실만 가지고는 행정직렬공무원이 교육행정직렬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용령 개정후 해당부처 직제가 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정원을 배정한 이후에야 분리신설된 직렬에서 근무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므로 갑경력·을경력의 판단은 행정직렬 공무원이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되는 관련직제 개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 4. 가점평정

### 《 개 요 》

- 가점기준 선정
  - ⇒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에서의 근무경력,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업무혁신 등의 기준에 따라 5점 범위 내에서 부여
  - ※ 소속장관은 가점기준을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가점종류에 대해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가 필요함
- 직무관련 자격증
  - 소속장관이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 특정직위 근무경력
  - 자체감사담당, 전문직위, 국민권익위 근무, 행정기관간 인사교류, 격무부서 근무 등
- 특수지 근무경력
  - 특수지역 근무경력은 특수지 가, 나, 다, 라 지역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 평정점 부여

Q A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4]와 [별표 5]에 나오는 자격증 가점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의 해당자격증 인정시 6·7급, 8·9급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격증 가점을 인정해야 하는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4], [별표 5]에 자격증 구분표 상의 직급 구분은 자격증 분류체계상 동일하게 취급한 것 일뿐, 실제 자격증 가점 부여시에는 계급별로 나누어 적용하여야 함
- 따라서, 6급의 바로 하위계급은 7급이므로, 6급이 8·9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점부여가 불가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 개 요 》

- 작성기준일
  - 매년 1.31, 7.31
  - ※ 조정 및 삭제사유 발생시 수시 조정
- 작성대상
  - 승진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 작성요소
  -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70~95%,  
경력평정점수는 30~5%가 될 수 있도록 구성
- 근평점수 반영기간
  - 5급(최근 3년이상), 6·7급·기능7급 이상(최근 2년이상), 8급,  
기능8급 이하(최근 1년 이상)
  -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직급별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함
- 효력발생
  - 작성기준일(조정일) 익일부터 효력발생

#### 5급 이하 공무원 평정제도(일반직 및 기능직)

##### 승진후보자명부

근무성적평가  
(70~95%)

- 근무실적 : 평가요소 자율결정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등)
- 직무수행능력 : 평가요소 자율결정 (기획력, 협상력 등)
- 직무수행태도 : 평가여부 자율 결정

경력평정  
(30~5%)

- 평정대상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으로 자율 결정
- 경력환산율 : 갑(10할), 을(8할), 병(6할), 정(3할)

가점평정  
(5점)

- 자율적으로 기준 설정 (직무관련자격증 소지, 특정직위 근무 경력, 도서·벽지 등 특수지 근무경력, 탁월한 근무실적 등)

Q A

1

신규채용된 행정9급 공무원이 과거 행정9급의 경력이 4년이 있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될 때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의 인정 범위는?

- 과거의 공무원경력이 있다하더라도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관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인정을 하지 않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 등) 제5항을 적용하여 산정 반영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제5항

## 6. 다면평가

### 《 개 요 》

#### □ 개념

- 다면평가란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다양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상사에 의한 일방 평가를 보완하는 한편,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임

\* 1998년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최초 도입(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근거

#### □ 제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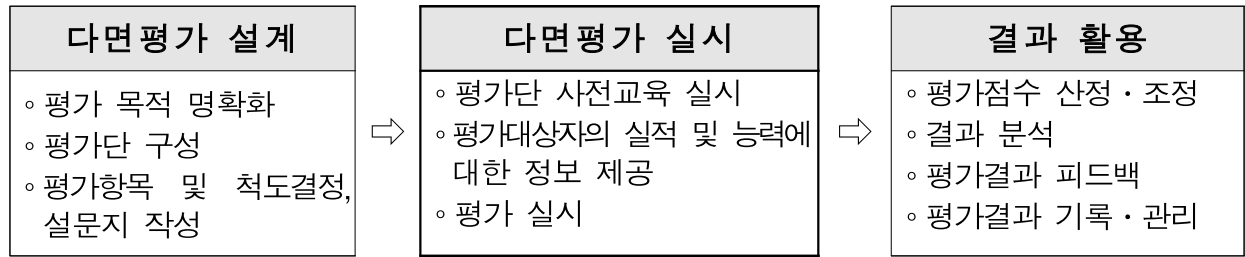
##### ○ 중앙행정기관

- 1998.12.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도입(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
- 2001. 1.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로 활용범위 확대
- 2002. 8. 「다면평가 운영요령」 제정(중앙인사위원회 예규)
- 2005.12.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인사관리에서 활용범위를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로 변경(공무원성과평가규정 제28조)
- 2008. 8. 「다면평가 운영요령」 매뉴얼 시행('08.5 행안부 예규 폐지)
- 2009.12. 「다면평가 운영요령」 개선
  - ※ '10년부터는 다면평가결과를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개선

##### ○ 지방자치단체

- 1999. 7.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 도입(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5)
- 2001. 3.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적용 확대(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 2001. 6.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로 활용범위 확대
- 2008. 6. 다면평가 운영지침 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69호)
- 2008. 9. 자치단체 다면평가 실시 자율권 부여
- 2009. 9.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마련('09. 9 행안부 예규 폐지)
- 2009.12.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09.12 행안부 예규 제289호 제정)
  - ※ 승진임용·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 교육훈련·역량개발 반영토록 함

## □ 운영절차



## □ 다면평가제도 문제 제기('09년)

- 인기투표 논란 : 업무능력보다는 인기, 개인감정 등 친소관계에 의한 평가
- 인사부서 등 특정부서에 유리하게 평가 : 인사부서 및 주무부서 유리
- 상사에 대한 평가의 영향으로 조직 장악력 문제 야기
- 빈번한 평가실시로 평가기능 왜곡
- 다면평가 시스템 미비 및 형식적 운영
- 노조 비협조자 '왕따 시키기'로 다면평가 기능 왜곡

## □ 2012년 부처별 운영현황

- 실시기관 :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18개 기관에서 실시
- 부처별 활용현황
  - 승진심사시 참고 : 14개 기관(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 지경부, 민주평통, 국세청, 농진청, 문화재청, 보훈처,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경찰청)
  - 역량개발 교육훈련 : 7개 기관(고용부, 교과부, 환경부, 외교부, 민주평통, 관세청, 방사청)
  - 성과급 지급시 참고 : 5개 기관(고용부, 민주평통,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1

상하관계가 엄격한 군 또는 경찰조직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조직분위기 와해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는지?

- 다면평가가 모든 조직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급질서가 명확한 조직이라고 하여 제도 적용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우선 조직의 다면평가 목적과 활용방안을 고려한 후 실시하되, 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에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



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거 소속장관이 다면평가 절차 및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속장관이 5급이상 공무원의 다면평가 실시 방침을 정하고 하위기관장이 하위직 공무원까지 다면평가를 확대실시할 수 있는지?

- 부처 인사규정상 각 부처 소속장관의 인사권이 하위기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 7. 성과관리카드제

### 《 개 요 》

#### □ 제도 개요

##### ○ 의의

- 기존 이력사항 위주의 「인사기록카드」를 개편하여 연도별로 추진한 업무성과를 누적적으로 기록하는 「성과관리카드」 도입
  -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05.5)
- '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하여 인사기록에 참고토록 함으로써 실적과 능력에 따른 인사운영 기반 구축
  - ※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하면서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로 변경

##### ○ 관련근거

-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 19885호, '07.2.12)
-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행안부예규 제157호('08.6.30)
  - ※ 각 부처에서 2005년부터 성과관리카드 작성('e-사람'시스템)

##### ○ 입력항목 및 정보 : 'e-사람'으로 구현(각급 기관 인사부서에서 총괄)

항 목	성과정보	비고
실적 및 능력평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성적평정결과</li> <li>• 성과급 등급</li> <li>• 다면평가 결과</li> </ul>	자체 기관
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정책평가 결과</li> <li>• 재정사업평가 결과</li> <li>• 기관역량평가 결과</li> </ul>	국무총리실(e-IPSES)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기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계약 등 평가등급 부여결과</li> </ul>	자체 기관
감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결과</li> </ul>	감사원, 자체 기관

※ 현재 정책평가정보는 각급 기관에서 수작업으로 입력

##### ○ 입력대상 : 성과계약 및 근무성적 평가대상 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등(특정직은 별도규정에 따름)

##### ○ 입력시기 : 성과계약 및 근무성적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

- 4급 이상(연 1회), 5급 이하(연 2회)

## □ 성과관리카드 활용

### ○ 승진 등 인사관리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 “성과관리카드상의 평가결과” 등
- 고공단 승진, 신규채용시 최근 3년간의 성과관리카드를 반드시 제출
- 그 외 전보나 교육훈련 파견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충원(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반드시 제출)

###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요구시 제출자료

### ○ 인재추천 :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는 국가인재DB와 자동 연계

## ※ 참고 : 추진경과(연혁)

-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 지침」 제정 및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05.)
- 각종 성과정보를 자동 누적·관리하는 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07. 11)

《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 개요》



### ○ 평가자가 피평가자에게 부여한 평가등급 부여결과를 평가자 성과관리카드에 기록을 위해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 지침」 개정(08. 3)

### ○ 인사자율성 확대 관련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 지침」 정비(08. 6)

- ※ 성과관리카드 기록·관리지침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관리기록 관리지침과 통합

### ○ 정부업무평가결과(e-IPSES) 자동연계 구축 협의(09. 3월)

- 국무총리실 'e-IPSES' 자료를 'e-사람' 과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1

성과관리카드는 1년 단위로 작성·관리되는데 비해 5급이하 근무성적 평가는 연 2회 실시되므로 연말에 상·하반기 평가를 재정리해야 하는지?

-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연간 실적 등을 재정리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상반기 평가결과와 하반기 평가결과를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후 상반기 실적·평가의견·등급·평가자를 우선 입력하고, 하반기 평가 후 하반기 실적·평가의견·등급·평가자를 입력토록 함. 즉 당해연도 성과관리카드안에 상반기 근평과 하반기 근평 결과가 동시에 기록 관리됨
- 참고로, 4급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최종평가서 내용을 익년도 초에 성과관리카드에 그대로 기록함

【관련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2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해야할 성과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각 부처 담당자 및 일반공무원들의 업무부담 해소방안은?

- 성과정보 입력에 대한 각 부처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e-사람’ 내에서 일부 성과정보의 자동이관 체제를 이미 완료하였음
- 구체적으로 ‘e-사람’상에서 5급이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요실적’, ‘상사평가의견’, ‘평가등급’이 자동으로 성과관리카드에 이관되며, 다면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 III. 성과기록



3

‘e-사람’ 상의 근무성적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경우, 평가결과들이 전산상 자동 연계되지 않으므로 성과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 평가결과가 전산상 자동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는 ‘e-사람’상의 성과관리카드에 직접 입력해야 함
- 다만, 안전행정부와 개별 협의를 통하여 자체평가시스템과 성과관리카드 연계 작업을 완료한 기관에서는 연계정의서에 따라 작성된 성과정보 파일을 한번에 등록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 III. 성과기록 -

④ 행정사항 - 가.

Q A

4

부처간 전보 등으로 과제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국무총리실의 정책 평가 결과는 전임자와 후임자 중 누구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는지?

- 정책평가결과는 해당과제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되어야 하므로, 부처간 전보 및 내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과제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담당한 자에 대해서만 평가결과 기록
- 다만, 6개월 미만 담당자라도 근무기간 중 정책성과의 결정적인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이를 판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도록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 III. 성과기록 -  
② 기타사항 - 1. - 다.

Q A

5

정책평가 및 감사 결과를 인사담당부서로 하여금 개인별 성과관리 카드에 입력·관리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책평가 결과의 성과관리카드 입력은 정책평가담당부서(예: 재정사업평가-재정기획관실)의 소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각 부처는 성과관리카드에 각 정보를 입력·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를 담당부서로 정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 III. 성과기록 -  
② 기타사항 - 5.

Q A

6

정책평가총괄부서와 감사총괄부서에서 성과관리카드의 해당 정보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그 부서도 인사부서와 마찬가지로 성과관리카드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책평가 및 감사결과 뿐만 아니라 각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부서는 소관사항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음
- 각 부처의 성과관리카드 총괄 관리자는 소속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록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 III. 성과기록 -  
② 기타사항 - 4.

## 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 당 자	담당업무	전화번호 (서울)
성과급여 기획과	(총괄기획계) 5급 김수란 6급 윤광순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	2100-4477 2100-4476
	(봉급계) 5급 임완배	봉급업무 총괄	2100-4481
	6급 박승일	연봉업무	2100-4482
	7급 김은희	호봉업무	2100-4485
	(수당계) 5급 정병진	수당업무 총괄	2100-4486
	5급 김민정	수당제도 개선, 수당조정계획 수립	2100-4473
	6급 조용범	수당제도 운영, 관련민원업무 처리	2100-4488
	7급 노하나	수당제도 운영, 관련민원업무 처리	2100-4487
	(여비계) 5급 장승천	여비업무 총괄	2100-4478
	6급 안정희	여비제도 운영 및 관련민원업무 처리	2100-4479
	(성과팀) 4급 온준환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업무 4급이상 성과계약 등 평가	2100-4472
	5급 박채영		2100-4475